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100624-01



#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박은정·김은설·윤지연



농림축산식품부



육아정책연구소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100624-01

##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연구 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 지 연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육아정책연구소

발간등록번호 11-1543000-100624-01

##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044) 201-1797

팩스 044) 868-0846

홈페이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목차

<b>I. 서론</b>	<b>1</b>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5
<b>II. 농업인 육아 지원 제도 현황 및 사각지대</b>	<b>9</b>
1. 육아휴직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 논의 .....	11
2. 중앙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현황 .....	18
3.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제도 현황 .....	23
<b>III. 육아기 농업인의 규모 추산 및 특성 분석</b>	<b>37</b>
1. 육아기 농업인 규모 추산 .....	39
2. 육아기 농업인의 자녀돌봄 경험 및 지원 욕구 .....	54
3. 농업인의 소득 특성 및 소득 자료 .....	73
<b>IV. 농업인 육아휴직급여 제도 설계 및 소요예산 추계</b>	<b>93</b>
1. 농업인 대상 육아급여 설계 쟁점 .....	95
2. 농업인 육아수당(급여) 정책 시나리오 .....	111
3. 소요예산 추계 .....	119
<b>V. 결론</b>	<b>123</b>
1. 농촌형 제도 설계(안) 종합 .....	125
2. 향후 추진 과제 .....	132
<b>참고문헌</b>	<b>137</b>
<b>부록</b>	<b>145</b>
부록1. 육아기 농업인 영아부모 면담지 .....	145
부록2. 육아기 농업인 유아기 이상 부모 면담지 .....	151



## 표 목차

〈표 Ⅰ-2-1〉 육아기 농업인 심층면담(FGI) 개요 .....	7
〈표 Ⅱ-1-1〉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 .....	12
〈표 Ⅱ-2-1〉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	21
〈표 Ⅱ-2-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급별 지원액 .....	22
〈표 Ⅱ-3-1〉 지자체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 .....	24
〈표 Ⅱ-3-2〉 농촌지역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금 지원 사업 사례 .....	26
〈표 Ⅱ-3-3〉 농촌지역 출산·육아 현금지원액: 0세, 첫째아 기준 기초지자체 사례 .....	28
〈표 Ⅲ-1-1〉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및 농림어업조사의 농업인 기준 .....	40
〈표 Ⅲ-1-2〉 농업 인구 규모 추이: 농림어업조사(2022년~2024년) .....	41
〈표 Ⅲ-1-3〉 시도별 농가 규모(2023년~2024년) .....	42
〈표 Ⅲ-1-4〉 경영주 연령별 농가(2023년~2024년) .....	43
〈표 Ⅲ-1-5〉 연령별 농가인구(2023년~2024년) .....	44
〈표 Ⅲ-1-6〉 농가인구의 고령인구 비율(2023년~2024년) .....	45
〈표 Ⅲ-1-7〉 분석자료 개요 .....	46
〈표 Ⅲ-1-8〉 분석 시 육아기 농업인 정의 .....	47
〈표 Ⅲ-1-9〉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 인구 규모 추계: 지역별 고용조사 (2022년~2024년, 하반기) .....	49
〈표 Ⅲ-1-10〉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 인구 규모 추계: 농림어업조사 (2022년~2024년) .....	50
〈표 Ⅲ-1-11〉 육아기 농업인 비율 추계 결과: 2022년~2024년 .....	52
〈표 Ⅲ-1-12〉 육아기 농업인 규모 기준치: 2022년~2024년 .....	53
〈표 Ⅲ-1-13〉 성별 육아기 농업인 규모 추계: 2022년~2024년 .....	53
〈표 Ⅲ-1-14〉 성별 육아기 농업인 통합 성비: 2022년~2024년 .....	54
〈표 Ⅲ-2-1〉 FGI 참여자별 특성 .....	55
〈표 Ⅲ-3-1〉 농가의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2020년~2024년) ..	75
〈표 Ⅲ-3-2〉 전·겸업별 농가수지(2023년~2024년) .....	77
〈표 Ⅲ-3-3〉 육아기 농가의 전·겸업 분포 .....	77
〈표 Ⅲ-3-4〉 육아기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금액 .....	78

---

〈표 Ⅲ-3-5〉 농업분야 사업소득 비과세·과세 항목 .....	79
〈표 Ⅲ-3-6〉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	82
〈표 Ⅲ-3-7〉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증명서) 활용 제도 .....	84
〈표 Ⅲ-3-8〉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 보험료 .....	91
〈표 Ⅳ-1-1〉 현금급여 구분 기준 .....	95
〈표 Ⅳ-1-2〉 농업인 기준 .....	101
〈표 Ⅳ-1-3〉 농업인 소득(매출) 파악 가능 유형 .....	108
〈표 Ⅳ-1-4〉 농업인 매출 및 소득증빙 확인 자료 .....	111
〈표 Ⅳ-2-1〉 농업인 육아수당(급여) 시나리오 핵심 요인에 따른 구분 .....	114
〈표 Ⅳ-2-2〉 농업인 육아수당(급여) 시나리오 안 .....	115
〈표 Ⅳ-3-1〉 육아기 농업인 규모 기준치: 2022년~2024년 .....	120
〈표 Ⅳ-3-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21년~2025년 .....	120
〈표 Ⅳ-3-3〉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소요예산 산출식 .....	121
〈표 Ⅳ-3-4〉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소요예산 산출: 1,500명 적용 .....	121
〈표 Ⅳ-3-5〉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소요예산 산출: 1,870명 적용 .....	122
〈표 Ⅴ-1-1〉 농업인 육아(휴직)급여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원칙 .....	126
〈표 Ⅴ-1-2〉 농업인 증빙기준(안) .....	130

---



## 그림 목차

[그림 II-1-1] 고용보험 사각지대 .....	13
[그림 II-1-2]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사각지대 범주화 .....	15
[그림 II-2-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	22
[그림 II-3-1]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	32
[그림 II-3-2]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홍보물 .....	34
[그림 III-1-1] 연도별 농가 추이: 농림어업조사(2020년~2024년) .....	41
[그림 III-1-2] 가구원수별 농가 비율(2023년~2024년) .....	43
[그림 III-3-1] 소득 종류별 농가소득 추이(2020년~2024년) .....	74
[그림 III-3-2]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추이(2020년~2024년) .....	75
[그림 III-3-3] 전·겸업별 농가 구성비(2023년~2024년) .....	76
[그림 IV-2-1]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 .....	112
[그림 IV-2-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113

---

# I

## 서론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다수 농업인은 육아로 인해 소득 상실 또는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금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다(박중서, 오상봉, 박은정 외, 2025). 반면, 농업인은 출산, 육아 등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제도 접근에 제약이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출산 관련 지원은 일부 제도화되어 있다. 여성농업인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신 2019년 7월 도입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출산일로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3개월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자영, 2022).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농업인 및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가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중단할 경우 45일~100일 한도 내에서 영농 및 가사 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

그러나 농업인 대상 지원은 주로 출산 전후의 일시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산 후 육아기에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육아휴직급여처럼 보전하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최근에는 농업인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특고직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95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을 명시하여, 임금근로자 중심 육아휴직제도에서 탈피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2025년 4월 발의된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에는 농어업인이 일정 기간 영농 활동을 중단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국가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이 제안되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농어업인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농업인 육아휴직급여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수준 등 핵심 설계 요소에 농업 특성 및 농업인의 노동 특성과 소득 구조를 반영한 구체화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은 도시 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농업인은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고 가족 단위 경영 및 무급가족종사자 의존도가 높으며, 상당수의 농업가구가 영농과 가사·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혼재성을 가지고 있다(박미선, 2023; 김은설 외, 2023). 또한 농업 소득은 계절성을 띠며 기상 여건, 시장 가격 변동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연도별 소득 변동 폭이 큰 경향이 있다(임소영 외, 2022). 따라서 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획일적 제도 확대만 논의될 경우, 제도 확대 이후에도 농업인은 여전히 적용 사각지대에 머무를 위험이 크며, 궁극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설계는 현재 제도 개편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농업인 육아휴직급여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파악 방법 및 소득 산정 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소득 수준에 연동되어 급여가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농업인 대상 급여 역시 기존 제도 원리에 근거하여 설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파악과 산정 기준이 제도 설계의 주요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업 소득은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고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농업인은 소득 및 매출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만으로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임소영 외, 2022; 박미선, 2023). 또한 예산 추계를 위해 필요한 ‘육아기 자녀(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농업인’ 규모 역시 정확히 집계·공표되는 통계가 부재하여, 제도 설계와 재정 추계를 위한 추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인의 규모를 추산하고, 농업인의 소득 파악 가능성 및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원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 농업인 출산·육아 지원 제도와 유사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농업인 대상 육아 시간지원의 공백 및 지원 필요성을 규명한다. 둘째, 육아기 농업인의 규모를 추산하여 잠재적 제도 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업인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육아휴직급여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현행 농업인 대상 출산·육아 지원 현황 분석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하여 출산급여, 농가도우미 사업 등 기존 농업인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을 통해 농업인 대상 육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기 농업인 규모를 추산한다.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통해 전체 농업인 및 농가 규모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농림어업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육아기(만8세 이하) 농업인 규모를 추산하였다.

셋째, 육아기 농업인의 특성을 분석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인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농업인의 자녀돌봄 양상 및 일·가정 양립 방식, 농업인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농업인 소득구조를 분석하고, 육아기 농업인의 소득 특성도 파악하였다.

넷째, 농업인의 소득정보 수집 및 파악방법을 검토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축산물소득조사, 농업ON 경영장부, 공익직불금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사회보험체계 내 소득파악 방식도 살펴보았다.

다섯째,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쟁점에 따른 제도 설계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시나리오는 지원 대상 및 수급 자격요건, 급여성격 및 지급방식, 지급 수준 및 기간, 소득 중단 및 감소 요건 등을 고려하였다. 우선,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기여에 따른 소득 기반 급여 또는 일정 수준의 수당 성격의 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구분한다. 또한 급여 성격 및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을 고려하며, 농업인 대상 지급 시에도 소득 중단 및 감소 판단 기준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여섯째, 앞서 추산한 육아기 농업인 규모와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 설계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각 정책 시나리오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다.

일곱째, 농업인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기존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과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 도입 시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농업인 출산·육아 지원 제도,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연구, 농업인 소득 구조 관련 연구 등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육아휴직제도 및 농업인 지원 관련 법령과 정책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2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육아기 농업인 규모를 추산하고, 농업인 소득 구조를 분석하였다.

셋째, 육아기 농업인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농업인 심층면담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집단당 4명 내외로 총 4개 집단을 실시하였다. 영아기(만0~2세) 자녀를 둔 농업인 2집단, 유아기 이상 자녀를 둔 농업인 2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영아기 집단에는 임신부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성 농업인도 함께 모집하여 3명이 포함되었다. 면담대상자는 전국적으로 모집하였다. 면담 참여자가 육아기 농업인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대면 집단 면담이 불가능하여 화상면담으로 진행되었다.

〈표 I-2-1〉 육아기 농업인 심층면담(FGI)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면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개 집단, 집단당 4명 내외</li> <li>• 집단 구분: 자녀 연령대(영아기, 유아기 이상)</li> <li>• 집단 구성 시 고려 사항: 면담 참여자 성별, 지역 분포</li> </ul>
면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1월 22일 ~ 1월 28일</li> </ul>
면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li> <li>• 반구조화된 질문지 사용</li> <li>• 화상면담</li> </ul>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육아휴직제도, 농촌 경제, 사회보장재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 활용 가능한 2차 자료, 농업인 소득 파악 방법, 제도 설계 방향 관련 자문과 잠정 도출된 제도 설계안의 타당성 및 현실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섯째,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 및 소요예산 추계를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제도 설계 방향을 그리면서 정책 대안 및 전략을 설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여러 설계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어서 시나리오별로 연간 소요예산을 추계하였다.



# II

## 농업인 육아 지원 제도 현황 및 사각지대

- 01 육아휴직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 논의
- 02 중앙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현황
- 03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제도 현황



## II. 농업인 육아 지원 제도 현황 및 사각지대

이 장에서는 먼저 현행 육아휴직(급여) 체계가 고용보험 기반의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제도 접근에서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제약이 심화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하였다. 이어 농업인의 출산·육아를 둘러싼 지원 체계를 검토하되,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일반 육아 지원을 포함해 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농업인 육아 시간 지원 설계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나 설계 아이디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타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지원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1. 육아휴직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 논의

#### 가. 육아휴직제도 개요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여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25). 육아휴직제도의 근거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용노동부, 2025).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25).

육아휴직제도 적용은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기타 불이익 처우, 해고 등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불이익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용노동부, 2025).

〈표 II-1-1〉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li> <li>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6개월 이상)</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가능(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li> </ul> </li> <li>분할 사용: 2회</li> </ul>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통상임금의 8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li> <li>-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li> <li>-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li> </ul> </li> <li>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에 따라 월 상한액 단계적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상한액이 50만원씩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상향</li> </ul> </li> </ul>

자료: 고용노동부(2025).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p. 195-234를 바탕으로 작성함.

## 나.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을 핵심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곧 제도 이용의 한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접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류정희 외(2018)는 모성보호제도 논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제도적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구분한 바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된다. 급여 사각지대는 적용대상임에도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등에서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거나, 가입 이후에도 출산 전후 퇴사 또는 수급자격 미충족 등으로 급여 수급이 어려운 집단을 포괄한다. 이병희(2020)는 고용보험 제도의 포괄 범위 밖에 놓인 비임금근로자 및 적용제외 임금근로자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실질적 사각지대로 구분하였다. 즉 제도(법) 차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제도적 사각지대로,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혜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실질적 사각지대로 별도 범주화한 것이다.

[그림 II-1-1]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만여성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 특고	초단시간	적용제외	고용보험 적용대상			급여 수급자
					미가입자	가입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출산전후 퇴사자	자격 미충족자		
제도적 사각지대			급여사각지대					

자료: 류정희 외(2018).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

장지연 외(2018)의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를 약 66.9%, 이병희(2020)는 45.2%를 제시하는 등 추정치가 다르게 보고되었다. 다만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2020년 이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와 비교하면 제도적 사각지대의 범위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로드맵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고용보험 도입을 지향하면서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일정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였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 12. 23). 이에 따라 예술인, 특고직, 플랫폼 종사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이후 가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된다.<sup>1)</sup>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초기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상회했

으며, 여성 비중이 64.8%로 높게 나타난 것은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교사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단, 2021. 11. 23; 박은정 외, 2022: 54에서 재인용).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추진과 함께 모성보호 제도에서도 적용대상 확대가 병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육아휴직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영역의 확대가 먼저 진행되었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도입되었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신설되면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는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완화가 곧바로 실질적 사각지대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 또는 사회보험 체계에서 이탈하는 경로가 지속되면 제도는 존재하더라도 이용과 수급이 어려운 집단이 남게 된다. 2022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출산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비율이 22.7%로 확인되어, 상당수 여성이 출산 전후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현실이 드러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 9. 6). 또한 박은정 외(2022)에서도 첫째 자녀 임신 중 및 출산 직후에 퇴사·이직 등 일의 변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25.3%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 한편 2021년 기준 정규직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사업체의 3분의 1 이상에서 확인되는 등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형태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실질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더 넓게 잔존하며, 실질적 사각지대에서의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서는 ‘정규직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이라는 응답 비율(36.2%)이 출산전후휴가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관찰된다.2) 박은정 외(2022)의 조사결과에서도 제도 미사용 사유로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가 출산전후휴가(44.7%), 배우자 출산휴가(32.7%), 육아휴직(32.4%)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대체인력이 없어서”, “직장 내 압박 및 직장문화로 인해”의 합이 40%를 넘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비자발적 미사용자가 제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7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75) (2026. 3. 15 인출).

2)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26. 1. 9 인출).

도의 실질적 사각지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함을 시사한다.

유해미 외(2024)의 연구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을 전제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대상 범주를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구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의 수급자 범주로 정의하되 기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2020년 이후 적용대상에 편입된 예술인·특고직·자영업자까지 포함한다. 또한 실질적 사각지대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정하지 않고, 가입 상태이면서도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조직문화나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으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미사용자까지 포괄하여 적용대상임에도 사업장 가입 미이행으로 미가입에 머무는 경우, 적용대상 확대 이후에도 가입률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 미가입으로 잔류하는 경우,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수급요건 미충족 또는 출산 전후 노동시장 이탈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급여 자격 미충족 사례를 실질적 사각지대로 분류한다.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고용정책 관점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등으로 한정되는 협의의 범주로, 가족정책 관점에서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림 II-1-2]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사각지대 범주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 적용 대상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sup>1)</sup>	비자발적 미사용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급여 자격기준 미충족자	고용보험 가입자 (예술인, 특고직, 자영업자 포함) <sup>2)</sup>
협의의 제도적 사각지대		실질적 사각지대			급여 수급자 <sup>3)</sup>		
광의의 제도적 사각지대							

주: 1)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2) 직역연금 가입자 포함  
 3) 급여 수급자는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자녀돌봄 시간지원 관련 수급자  
 자료: 유해미, 최효미, 김아름, 박은정, 이희현, 김재윤(2024). 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p.229.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포괄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휴가·휴직제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관대한 편이지만, 출생아 부모 대비 사용률이 낮다. 그 핵심 원인은 그간 고용보험 기반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대상자의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나,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맞춰 육아휴직급여 적용 설계를 정교화할 과제가 남아 있다. 예술인·특고직에 적용되는 동일직장 계속근무기간, 노무제공 계약기간, 소득감소(중단) 기준 등은 향후 자영업자 급여 설계와도 연동되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유해미 외, 2024).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인지도가 낮아 새로 포괄된 직종 상당수가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가 있으며, 비정형근로자는 알지만 본인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박은정 외, 2022). 가입 기준과 급여,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혼인·출생신고 등 행정 접점에서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아 가입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고, 비정형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낮은 보장성 개선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유해미 외, 2024).

#### 다. 농업인 육아 시간지원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육아지원 제도는 대체로 임금근로자의 표준적 노동시간과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의 불규칙적이고 계절적인 노동과 가족경영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오지 못했다(박미선, 2023). 여기에서는 농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기 위한 핵심 정책축으로 농업인 육아 시간지원이 검토되어야 하는 배경 및 이유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에서는 보통 보육기관 접근성이 낮고, 돌봄 인력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긴급 돌봄이나 일시돌봄의 자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김은설 외(2023)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개선 필요사항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데가 없다’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지 농촌의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특성상 일이 발생했을 때 ‘미룰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녀돌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 중단은 영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득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업인 육아 시간지원은 농가의 육아 지원이면서 동시에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안전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은 일·생활 간 경계가 모호하다. 농업은 자영업, 가족경영의 비중이 높아 일반 임금근로와 달리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일터가 가정과 공간적으로 겹치거나 업무가 불규칙하게 분절된다. 이는 국내 농업 분야의 특성이 아니라 농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해외 농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Černič Istenič, 2025). 따라서 농업인의 돌봄 문제는 노동시간 구조 자체로 인한 위험이므로 이에 대응한 지원 방안을 공적인 체제 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의 시기적, 시간적 특수성에 대응한 육아 시간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농촌에서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중 노동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시간지원이 필요하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에서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일·가정관리·돌봄 등)을 더 많이 사용하며, 농림어가 여성은 남성뿐 아니라 비농림어가 여성보다도 가정 내 노동 시간이 길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 특히 경북의 농림어가 여성은 가정관리 시간이 길어서 시간적으로 높은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 8). 실제 생활시간에서 돌봄은 농업노동, 가사노동과 결합해 여성의 노동시간을 길게 만들고, 그 결과 청년·여성의 농촌 정착과 농업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육아 시간 지원은 돌봄 제공뿐 아니라, 농촌 여성의 과중한 노동시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노동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장치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농업인에게 일반적인 육아휴직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육아로 인해 필요한 대체인력조차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이 육아로 인해 장기간 일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에 숙련된 대체인력을 구하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에 장벽이 크게 존재한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스웨덴 연구에서는 휴직 제도가 자영업이나 특수고

용의 조건에 충분히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농업의 경영구조에 따라 일·가정 균형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Eriksson & Hajdu, 2021). 이는 한국의 농업인 육아지원 설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짧은 시간 단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간지원이 필요하며, 농번기나 노동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연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보조인력(도우미)을 활용한 대체돌봄이나 대체노동 인력의 투입으로 인한 지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중앙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현황

이 절에서는 중앙정부의 농업인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이후 육아를 직접 지원하는 별도 지원 정책은 찾기 어려우므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농촌 대상 육아정책을 살펴보았다. 농업인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임신·출산 여성에 대해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임신·출산 시 농지 임대차 허용’ 등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 가. 농업인 임신·출산 지원 제도

####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출산전후휴가(90일)를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출산급여이며, 결과적으로 출산한 농업인 여성에게도 적용이 되는 제도이다. 해당 지원 제도의 목적은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감소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혹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지원액은 총 150만원으로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시기는 출산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에 가능하고, 출산급여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의 제출서류가 요구되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 2) 임신·출산 시 농지 임대차 허용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예외의 경우로 질병, 징집, 취학,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필요 부상, 교도소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의 8가지 사유가 해당한다. 농업의 경우 상당한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 많아 임신·출산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나 위탁경영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허용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개정하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 및 위탁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출산 여성의 농업 경영중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나. 농촌 지역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며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 맞춤형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1) 농촌아이돌봄 지원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하고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 사업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3명~1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소규모 어린이 집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시설비 15,200만원, 운영비 1,37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지원 대상은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2025년 11월 현재 전국의 137개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수는 총 1,620명으로, 평균 개소당 12명 정도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0866/fileData.do>, 2026. 1. 9 인출).

## 2) 찾아가는 돌봄교실

보육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놀이차량이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대여, 육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공립이나 민간 등 어린이집이 일정 구역 내에 없어서 이용이 어렵고 보육서비스 수요가 있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혹은 보육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운영비로서 개소당 최대 15,2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의 운영방법을 보면, 월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점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거나, 아동 규모가 적은 지역은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놀이 프로그램이나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내용을 정리하면, 놀잇감 및 도서 대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4).

## 3) 농번기 돌봄지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근거법으로 하여 농업인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돌봄방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4~10개월 간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소당 시설비 20백만원 내외, 운영비 26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이 된다(농림축산식품, 2025). 운영은 주말동안 토요일, 일요일 중 1~2일을 선택하여 운영하되 최소 10시간 이상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4~8개월 운영 기간, 만2세 이상 초등학교 2학년 아동까지 돌봄 대상 기준이었던 것을, 4~10개월 운영 기간 허용으로 연장하고 돌봄 대상도 초등학교 4학년 아동까지로 확대하여 농번기 부모 양육 부담을 더는 데 확대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번기 돌봄지원 서비스에는 농업인 자녀를 필수로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5)

#### 다. 유사 지원 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의거하여,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25-660).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1〉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분	내용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품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제2025-660),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p. 1.

소상공인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이 가능하며,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며, 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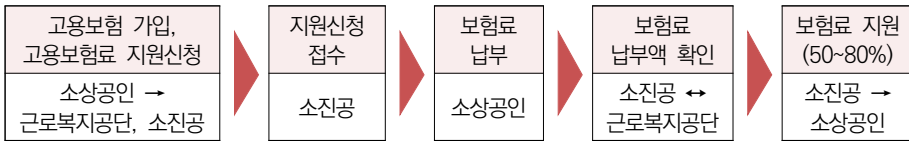
작되고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되는 절차로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25-660).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기 가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한다.

〈표 II-2-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급별 지원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제2025-660).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p. 2.

[그림 II-2-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주: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제2025-660).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p. 2.

##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며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두루누리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2025. 1. 30 인출). 단,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6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건설·별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점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가

포함되어 있다(두루누리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2026. 1. 30 인출).

### 3)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제도

정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2026년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1,060,000원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60,000원 보험료인 100,700원의 50%에 해당하는 50,3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 월 연금보험료 납부액에서 지원금액을 공제받은 보험료를 납부한다.<sup>3)</sup>

## 3.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제도 현황

### 가. 지자체별 농업인 및 농촌지역 현금·비용 지원

#### 1)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의 시행)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업과 가사 일손을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 사업의 목적은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을 중단한 여성농업인을 농가도우미가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해당 사업명은 ‘출산농가영농도우미’

3) 국민연금\_연금보험료.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O038M0.do?menuId=MN24001113&tab=tab5> (2026. 2. 9 인출)

(경북 영주),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경기 가평), ‘출산 농가도우미’(제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전북) 등으로 일부 다르게 호칭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해당 배우자(남성농업인)이며 지자체별로 1일 40,000~100,000원의 80~100%를 지원하고 있어 일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0~20%자부담). 지원 기간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대부분 40~9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지자체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예를 들면 경북의 경우는 출산 후 27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 때 남성은 출산 전 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3-1〉 지자체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현황

시·도	지원 기간 (일)	일일 단가 (원)	'24년 실적		예산별 비중(%)		
			인원(명)	금액(백만)	도비	시군비	자부담
경기	90	97,216	22	149	20	80	-
충북 <sup>1)</sup>	80	79,000~ 80,000	6	49	-	70-88	12-30
충남 <sup>2)</sup>	45~60	60,000~ 100,000	9	26	-	80~100	0~20
전북	100	90,000	45	364	25	65	10
전남	(여)70/ (남)20	80,240	71	256	10	70	20
경북 <sup>3)</sup>	(여)90/ (남)10	90,000	68	310	24	56	20
경남 <sup>4)</sup>	90	81,000	38	260	20	65	15
제주	90	80,240	28	181.7	100	-	-
	계		287	1,595.7			

주: 1) 충북(3개 시군): 영동, 괴산, 음성

2) 충남(7개 시군): 서산, 논산, 청양, 금산, 부여, 홍성, 예산

3) 경북: 구미, 울릉 제외

4) 경남(13개 시군: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209939호).

## 2) 시도별 현금성 지원

### 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초기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이다. 이 사업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아용품 구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가 출생가정에 대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출산지원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모로, 영아의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도내 거주기간 자체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며, 지급수단은 지역화폐이다. 따라서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액이 증가하여, 예를 들어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와의 연계가 전제된다.<sup>4)</sup>

#### 나) 충북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는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총 1,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부 또는 모와 아동이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이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0세 시점이 아니라 1세 생일부터 6세 생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지급되며, 지원금은 1세 100만원, 2세 200만원, 3세 200만원, 4세 200만원, 5세 200만원, 6세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지급은 각 기준일 심사 후 다음 달 말까지 이루어진다.<sup>5)</sup>

#### 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급여(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

4)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36405500&bcIdx=&bsIdx=838&menuId=1534&page=1> (2026. 3. 17 인출)

5)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507> (2026. 3. 17 인출)

000000104015060003, 2026. 2. 1 인출).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내 거주하고 전북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가 대상이다(군산시 공고 제 2626-170호).

라)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sup>6)</sup>

경상남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청년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24: 73).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지원 내용을 보면,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출산 및 보육 관련 가맹점에 사용가능한 출산바우처를 9개월 간 각 80만원, 총 72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1년 중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기간(3개월)을 제외하고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12개월간 연속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3) 기초지자체의 농촌지역 출산·육아 현금 지원

이 외에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내 주민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군단위 기초지자체의 현금 지원 사업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II-3-2>와 같다.

<표 II-3-2> 농촌지역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금 지원 사업 사례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인천	강화군	양육비	출산일 전 관내 주민등록 두고 2년 이상 거주, 같은 세대 출생신고 한 대상아 부 또는 모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첫째(120), 둘째(240), 셋째(540), 넷째 이상(720)	최대 3년

6)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해온 지원 제도이나 2025년에 해당 사업이 일몰된 상태임. 그럼에도 사업이 가진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어, 참고 사항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함.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충북	단양군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 셋째 이후 자녀 관내 주민등록, 거주, 5세 이하 아동	만0세: 월 35만원 만1세: 월 30.8만원 만2세: 월 25.4만원 만3~5세: 월 15.8만원	
충북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	첫째아 : 350만원 둘째아 : 600만원 셋째아 : 700만원 넷째아이상 : 1,000만원 (분할지급)	
충남	홍성군	육아지원금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거주 셋째 이상 출산가정	월 15만원, 24회	2년
전남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2.1.1.이후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육아휴직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대상자녀 군 주민등록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월 50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600만원)	12개월
경남	창녕군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셋째이상 자녀 중 5세 이하 (5세 이르는 해당연도까지 지원) 영유아 양육 가정, 모두 관내 주민등록, 거주	월 20만원	
경남	남해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부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두고 거주(셋째아 이상)	출생일 다음달부터 만6세 미만 (최대 71개월까지)	71개월 까지
경남	거창군	양육지원금 지원	3개월 이상 관내 거주, 6세 미만 영유아 둔 가정	첫째, 둘째: 20개월×30만원 셋째이후: 60개월×30만원	
경남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요건 충족 육아휴직자 관내 1년 이상 거주, 대상자녀 관내 거주	육아휴직 사용 남성근로자 월30만원	6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209939호); 영동군 홈페이지. <https://www.yd21.go.kr/kr/html/sub04/0409.html> (2026. 3. 18인출)

#### 4) 농업인 출산·육아 현금지원 기초지자체 사례 분석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 지원 중에서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였다. 출산·육아 관련 현금 지원이 있는 기초지자체로 충북 단양군, 충남 홍성군,

경남 거창군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만 분석에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지급되는 지원, 남성 육아휴직장려금, 현금이 아닌 서비스 지원은 제외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에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하였다.

한편, 농가도우미나 출산도우미와 같은 인력지원형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 가능 인원에 제한이 있고, 실제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수급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 분석의 총액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첫째아를 둔 0세 가구를 기준으로, 각 사례 지역에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현금 지원 총액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출산급여는 주로 출산 직후 지급되고, 부모급여는 연령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화되며, 지자체 지원 역시 지역별로 지원기간, 연령별 지원수준, 지급요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의 지원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를 위해 첫째아 0세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별도 현금지원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도 첫째아 0세 기준 연간 1,670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39.2만원이다. 여기에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출산·육아 현금지원액을 추가로 합산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3-3〉 농촌지역 출산·육아 현금지원액: 0세, 첫째아 기준 기초지자체 사례

단위: 만원, 개월

시도	시군구	중앙정부 지원				시도 지원	기초지자체 지원	연간 지원금 총액	평균 월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충북	영동군	월 100만원 ×12개월	월 10만원 ×12개월	200만원	월 50만원 ×3개월	100만원 (일시금)	출산육아수당 50만원(일시금) + (월 15만원 ×12개월)	연 2,000만원	166.7 만원
		출산축하금 500만원 (일시금)							
충남	홍성군	월 100만원 ×12개월	월 10만원 ×12개월	200만원	월 50만원 ×3개월	-	출산축하금 500만원 (일시금)	연 2,170만원	180.8 만원

시도	시군구	중앙정부 지원				시도 지원	기초지자체 지원	연간 지원금 총액	평균 월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고용보험 마적용자 출산급여				
경남	거창군	월 100만원 ×12개월	월 10만원 ×12개월	200만원	월 50만원 ×3개월	-	영유아 양육지원금 월 30만원 ×12개월	연 2,030만원	169.2 만원

주: 1) 충남 홍성군 - 45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 1일 기준단가(8만원)의 80%(64,000원) 지원  
 2) 경남 거창군 - 9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 1일 기준단가(8.3만원)의 85%(70,550원) 지원  
 3) 충북 영동군 - 8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 1일 68,000원 지원  
 4) 충북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0세)는 일시금 5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209939호).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사례 중 첫째아 0세 기준 현금지원 총액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 홍성군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경우 연간 총지원액은 2,170만원이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80.8만원 수준이다. 홍성군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현금지원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생순위별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첫째아에게는 5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둘째아와 셋째아는 연차별 분할지급 방식으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이 지원된다. 넷째아는 연 400만원씩 5년간 총 2,000만원, 다섯째아는 연 60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이 지급된다.<sup>7)</sup> 여기에 더해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총 24회의 육아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총액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홍성군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45일 범위 내에서 1일 기준단가 8만원의 80%인 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4년 공고 기준 지원대상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음으로 경남 거창군의 경우, 2026년 기준 첫째아 0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연간 현금지원 총액은 2,030만원이며, 월평균으로는 169.2만원이다. 거창군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첫째아와 둘째아에게는

7) 홍성군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gstory&logNo=223147637008> (2026. 3. 19 인출)

월 30만원씩 20개월, 셋째아 이상에게는 월 30만원씩 60개월을 지급한다.<sup>8)</sup> 이는 국가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거창군 자체 양육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거창군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1일 기준단가의 85%인 70,550원을 지원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 역시 지원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모든 대상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현금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2025년까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통해 월 80만원씩 9개월,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 현재 해당 제도는 일몰로 종료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충북 영동군의 경우, 2026년 기준 첫째아 0세 가구의 연간 현금지원 총액은 2,000만원이며, 월평균으로는 166.7만원이다. 영동군의 대표적인 군 자체 현금지원은 출산양육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를 군내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둘째아 이상은 기존 자녀들도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7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모두 분할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sup>10)</sup> 첫째아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뒤, 이후 매월 15만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한다.<sup>11)</sup> 여기에 더해 충청북도도 차원에서 출산육아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을 연령별로 분할 지급한다. 이 가운데 1세 시점에 지급되는 100만원을 본 분석에서는 0세 지원에 포함하였다. 또한 총액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영동군의 농가도우미 제도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80일 범위 내에서 1일 6만 8천 원을 지원하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성농업인에게도 최대 20일 지원이 가능하다.<sup>12)</sup>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면,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관련 현금지원 규모는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도 일정 수준에 이르지만, 기초지자체의 추가 지원 여부에

---

8)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ld=WLF00004516> (2026. 3. 18 인출)  
9) 거창군 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00314/01468/01501.web?amode=view&gcode=1002&idx=15009180&artiSno=> (2026. 3. 18 인출)  
10) 영동군 홈페이지 <https://www.yd21.go.kr/kr/html/sub04/0409.html> (2026. 3. 18 인출)  
11) 영동군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yd21.go.kr/health/html/sub05/050503.html> (2026. 3. 18 인출)  
12) 충청북도 청년포털.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560> (2026. 3. 18 인출)

따라 실제 체감 가능한 지원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시·도 수당 등을 결합함으로써 첫째아 0세 가구 기준 연간 2천만원 내외의 현금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는 출산 전후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실제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300만원 안팎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이는 명목상 현금지원 규모가 적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뿐 아니라 대체노동 확보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번기나 노동집약적 영농에서는 대체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워 단순한 현금지원만으로는 출산·육아기의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

## 나. 지자체별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 1)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 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서울시는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외되어온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해 2024년 4월 22일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3월 1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5. 6. 13). 본 제도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 240만원을 보장하고 다태아의 경우 17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임신부 출산급여는 총 1,270명이 지원을 받았다(서울시 보도자료, 2025. 6. 13).

#### 나)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서울시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시작하였고,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요건과 사업장 등록증 상 서울 소재 요건을 개선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5. 6. 13). 임금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을 보장받도록 되어있으나, 1인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병원 동행 등

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462명이 지원을 받았다(서울시 보도자료, 2025. 6. 13).

[그림 II-3-1]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예술인 등
지원금액	90만원	80만원
신청자격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③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경우 ④ 사업장 소재지 무관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 > 서울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원
- > 문의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25. 6. 13),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더 쉬워진다. p. 6.

### 다)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존재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제도 3가지를 마련하여,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

하는 고정비용(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원한다(서울시 보도자료 2024. 8. 27).

첫째,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은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와 연계하여 경력 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둘째,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는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충족 되지 않는 돌봄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1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하고 10,000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셋째, 고정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서울시 보도자료 2024. 8. 27).

## 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출산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천광역시에서는 1인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와 육아휴직으로 인력 공백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2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5. 2. 24). 단, 해당 사업은 KB금융그룹 후원으로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며, 출산급여 지원금 규모는 304명 대상이었고 대체인력 지원금 규모는 215명이었다(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25-01호).

## 3) 경기도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사업

이천시는 2026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 어려운 소득보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천시 <https://www.icheon.go.kr/news/board/post/view.do?bcIdx=785&mid=0301000000&idx=316308>, 2026. 1. 30 인출).

[그림 II-3-2]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홍보물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 대상**

**대상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출산여성

**지원금액**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 170만원)

**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이천시보건소 신청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급신청 용지서

※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1

자료: 이천시 <https://www.icheon.go.kr/news/board/post/view.do?bcldx=785&mid=0301000000&idx=316308>(2026. 1. 30 인출).

지원요건은 첫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둘째,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셋째,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넷째,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등이다. 이상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할 때, 출산급여를 월 30만원씩 3개월 현금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유·사산 산모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별로 지원 금액을 지정하여 지급한다(이천시 <https://www.icheon.go.kr/depart/contents.do?mid=0604070207>, 2026. 1. 30 인출).

#### 4) 광주광역시 육아지원패키지

광주광역시는 KB금융그룹 후원으로 2025년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상으로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비를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였고 대체인력 지원금 규모는 50명이

었다(광주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3호). 둘째,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광주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민간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이용할 경우에, 1자녀 세대 총 360만원(월 최대 60만원, 6개월) 2자녀 세대에게는 총 540만원(월 최대 90만원,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규모는 225명 이었다(광주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2호). 셋째, 소상공인 출생 특별지원금은 광주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2025년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특별지원금을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명 내외의 사업규모로 진행되었다(광주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40호).

#### 5)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는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3종 지원사업으로 첫째,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둘째,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셋째,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지원사업을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자녀 요건을 완화하여 지속하고 있다(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https://bsbsc.kr/business/65>, 2026. 2. 1 인출). 3개 사업 중 1가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 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 최대 3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소상공인 사업장 근무 근로자 포함)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 전액(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지원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이 무주택자이고 임차소상공인인 경우 출산 및 육아 응원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부산경제진흥원 공고문, 2024. 12. 18).

추가적으로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을 25년부터 실시하여, 출생 자녀당 사업체 경영비용(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부산경제진흥원 공고문, 2025. 11. 12).

#### 6)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을 기준 대전시 거주 6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대전 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25년도 출산한 경우, 산후 건강관리비 1인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모는 400명 내외였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25. 1. 17).

#### 7)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휴·폐업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있는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대 2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시책 [https://xn--289an1an6j5ul35d48ai5dj0ixsc0uid4bh0n.kr/gb\\_sp\\_info03.php?CCATE=08](https://xn--289an1an6j5ul35d48ai5dj0ixsc0uid4bh0n.kr/gb_sp_info03.php?CCATE=08), 2025. 1. 30 인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년도 매출액이 년 12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 및 거주지 주소는 사업 기간 내 유지되어야한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소상공인과 대체 인력이 협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연간 1,000명 규모로 지원을 할 수 있다(경상북도 공고 제2024-1612호).

# III

## 육아기 농업인의 규모 추산 및 특성 분석

01 육아기 농업인 규모 추산

02 육아기 농업인의 자녀돌봄 경험 및  
지원 욕구

03 농업인의 소득 특성 및 소득 자료



### Ⅲ. 육아기 농업인의 규모 추산 및 특성 분석

이 장에서는 육아기 농업인(가구)의 규모와 자녀돌봄의 실제 양상을 다층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와 농가인구의 최근 추이를 확인한 뒤, 지역별고용조사와 농림어업조사(농업)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인 및 농가의 규모를 추정하고, 조사 간 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비율 결합 방식을 통해 기준치를 산정하였다. 이어 영농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FGI)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이용 및 연장·방과후 이용,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새벽·야간·농번기)와 동원되는 돌봄 자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돌봄 서비스의 배정 불안정, 시간대 미부합 같은 이용 제약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가경제조사 및 농림어업조사 분석을 통해 농가의 소득 구성과 육아기 농가의 전·점업 분포,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육아기 농가가 처한 경제적 기반과 영농 운영 조건을 검토하였다.

#### 1. 육아기 농업인 규모 추산

##### 가. 농업 인구 추이

농업인구 규모를 검토하기에 앞서 농업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기준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한편, 농가 규모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통계자료인 농림어업조사에서 농업인 기준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농림어업조사에서 농업인은 논이나 밭을 1,000㎡(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조사기준일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즉, 농림어업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의 두 가지 항목에 속할 경우에 농업인으로 하였으며, 사육 가축의 평가액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하였다.

〈표 III-1-1〉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및 농림어업조사의 농업인 기준

구분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li> <li>•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ul>
농림어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li> <li>•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li> <li>• 조사기준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B%86%8D%EC%97%85%EC%86%8D%EB%86%8D%EC%B4%8C%20%EB%B0%8F%20%EC%8B%9D%ED%92%88%EC%82%B0%EC%97%85%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20#\(2026. 1. 27 인출\);](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B%86%8D%EC%97%85%EC%86%8D%EB%86%8D%EC%B4%8C%20%EB%B0%8F%20%EC%8B%9D%ED%92%88%EC%82%B0%EC%97%85%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20#(2026. 1. 27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일러두기.

먼저, 농림어업조사에 따른 농가수와 농업인구 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농가 수는 2022년 약 102만 가구, 2023년 약 100만 가구, 2024년 약 97만 가구로 감소 추이를 보였으며, 총가구 대비 농가 비율 또한 2022년 4.7%, 2023년 4.5%, 2024년 4.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농업인 수도 2022년 약 217만명, 2023년 약 209만명, 2024년 약 200만명으로 감소하여 농가 인구는 2022년 2,166천명에서 2023년 2,089천명, 2024년 2,004천명으로 감소하여, 2023년 대비 2024년에 -4.1% 줄었다.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은 2022년 4.2%에서 2024년 3.9%로 0.3%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농가 인구는 2022년 1,069천명에서 2024년 979천명으로 45.7천명 감소하였고, 여자 농가 인구는 2022년 1,096천명에서 2024년 1,025천명으로 39.5천명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성비(남자 100명당 여자 수)는 2022년 97.5에서 2024년 95.5로 낮아져, 농가 인구 내에서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5. 4. 17).

〈표 Ⅲ-1-2〉 농업 인구 규모 추이: 농림어업조사(2022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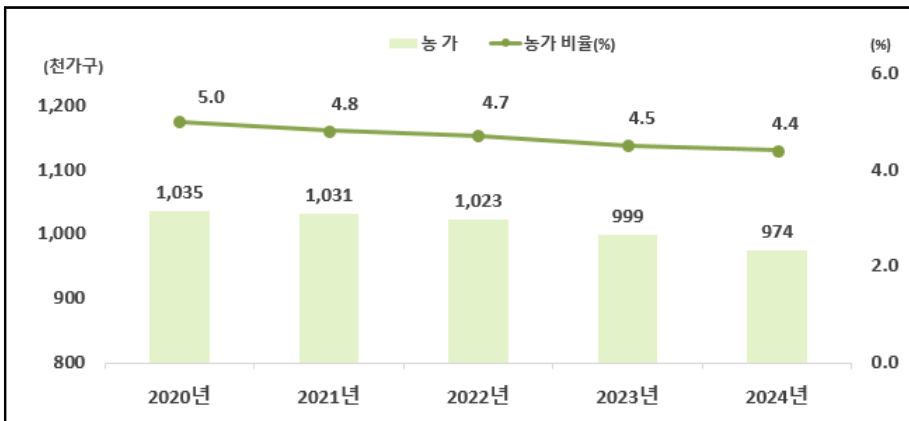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천명, %, %p

구분	2022	2023(A)	2024(B)	증감 (C=B-A)	증감률 (C/A×100)
농가수	1,023	999	974	-25.3	-2.5
농가 비율(%)*	4.7	4.5	4.4	-0.2	-
농가인구	2,166	2,089	2,004	-85.3	-4.1
남자	1,069	1,025	979	-45.7	-4.5
여자	1,096	1,064	1,025	-39.5	-3.7
성비	97.5	96.3	95.5	-0.8	-
농가인구 비율(%)*	4.2	4.0	3.9	-0.2	-

주: \* 총가구 및 총인구에 대한 농가, 농가인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 6.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가 수와 농가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기간 전반에서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가 비율 역시 하향 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가 및 농가인구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1-1] 연도별 농가 추이: 농림어업조사(2020년~2024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 6.

2023년과 2024년의 시도별 농가 규모를 보면, 전국 농가 수는 2023년 999천 가구에서 2024년 974천 가구로 약 -2.5% 감소하였다. 2024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이 1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남(14.5%), 충남(11.6%), 경남 (11.6%), 경기(10.9%)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으며, 감소 폭은 제주가 -4.1%, 전남이 -3.9%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은 -0.8%로 가장 적은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III-1-3〉 시도별 농가 규모(2023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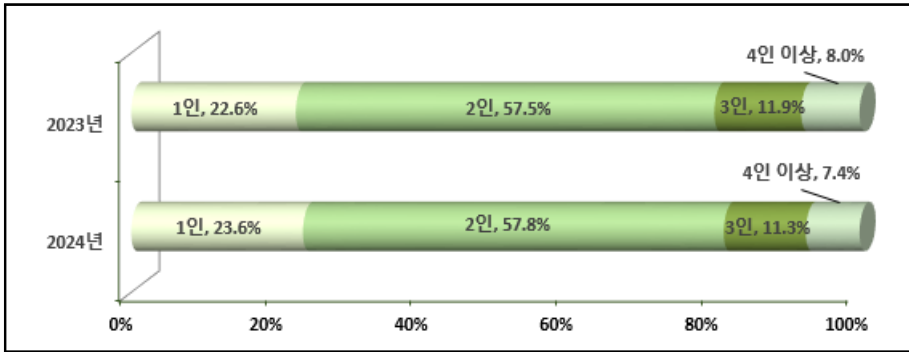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

	2023(A)		2024(B)		증 감 (C=B-A)	증 감 륜 (C/A×100)
		구성비		구성비		
전 국	999	100	974	100.0	-25.3	-2.5
특·광역시*	91	9.1	89	9.1	-2.3	-2.5
경 기	110	11.0	106	10.9	-3.3	-3.0
강 원	66	6.6	65	6.7	-0.5	-0.8
충 북	70	7.0	68	7.0	-1.1	-1.6
충 남	116	11.6	113	11.6	-2.5	-2.1
전 북	90	9.0	88	9.0	-2.3	-2.5
전 남	145	14.5	139	14.3	-5.6	-3.9
경 북	166	16.6	163	16.7	-3.2	-1.9
경 남	116	11.6	113	11.6	-3.3	-2.8
제 주	30	3.0	29	3.0	-1.2	-4.1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 7.

가구원수별 농가 비율을 보면, 2인 가구가 2023년 57.5%, 2024년 57.8%로 과반을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22.6%에서 2024년 23.6%로 1.0%p 상승한 반면, 3인 가구는 11.9%에서 11.3%로 0.6%p 하락하였다. 4인 이상 가구 비율도 2023년 8.0%에서 2024년 7.4%로 0.6%p 감소하였다. 이는 농가의 가구 구성에서 소규모 가구(특히 1인 및 2인) 비중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은 농가 비중은 축소되는 방향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III-1-2] 가구원수별 농가 비율(2023년~2024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 8.

2024년 농가(974천 가구) 중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50.8%를 차지하며, 60~69세는 33.1%, 50~59세는 12.9%로 높은 연령층에 비중이 높았다. 반면, 40~49세는 2.8%, 40세 미만은 단 5천 가구로 0.5%에 불과하였다.

2023년 대비 2024년 변화는 전체 농가 수가 25.3천 가구(-2.5%) 감소한 가운데,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는 3.6%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연령층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농가 수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연령별 증감률을 보면 특히 40~49세는 -17.3%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40세 미만은 -15.4%, 50~59세는 -11.4%였다. 이처럼 중·장년층 구간에서는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영주 연령 구조가 고령층으로 더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성별로 보면 2024년 남자 경영주 농가는 775천 가구, 여자 경영주 농가는 199천 가구였으며, 여자 경영주 농가의 경우 70세 이상 비중이 70.2%로 매우 높다.

<표 III-1-4> 경영주 연령별 농가(2023년~2024년)

단위: 천 가구, %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3	999 (100.0)	5 (0.5)	33 (3.3)	141 (14.2)	342 (34.2)	477 (47.8)
남자	803 (100.0)	5 (0.6)	30 (3.7)	126 (15.7)	297 (36.9)	345 (43.0)
여자	196 (100.0)	0 (0.2)	3 (1.6)	15 (7.7)	45 (23.1)	132 (67.3)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974 (100.0)	5 (0.5)	27 (2.8)	125 (12.9)	322 (33.1)	495 (50.8)
남자	775 (100.0)	4 (0.6)	25 (3.2)	111 (14.4)	279 (36.1)	355 (45.8)
여자	199 (100.0)	0 (0.1)	2 (1.2)	14 (7.1)	42 (21.4)	140 (70.2)
증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 '24년 65세 이상 경영주는 농가 678천 가구(전체 농가의 69.7%) 전년대비 15천 가구(2.2%) 증가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 9.

2023년과 2024년 농가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를 보면, 농가인구는 2023년 2,089천명에서 2024년 2,004천명으로 85.3천명(-4.1%)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농가인구만 2023년 대비 2024년에 2.3% 증가를 보였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 인구는 2만 8천명에서 2만 2천명으로 가장 큰 폭(-21.0%)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10~19세에서도 -14.4%의 감소를 보였다. 즉, 아동·청소년층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0~49세 -11.5%, 50~59세 -10.0%, 20~29세 -9.3%, 30~39세 -6.9% 감소하여 청·장년층에서도 상당한 농가인구 감소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2024년 남자 농가 인구는 979천명, 여자 농가인구는 1,025천명이며, 70세 이상 비중은 남자 38.4%, 여자 40.0%로 2023년 대비 모두 높아졌다. 즉, 7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증가하고, 이하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하여,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표 III-1-5〉 연령별 농가인구(2023년~2024년)

단위: 천 명, %

	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3	2,089 (100.0)	28 (1.4)	78 (3.7)	79 (3.8)	69 (3.3)	115 (5.5)	312 (14.9)	640 (30.7)	767 (36.7)
남자	1,025 (100.0)	14 (1.4)	41 (4.0)	44 (4.3)	39 (3.8)	59 (5.8)	149 (14.6)	311 (30.3)	367 (35.8)
여자	1,064 (100.0)	14 (1.3)	37 (3.5)	35 (3.3)	30 (2.8)	56 (5.2)	163 (15.3)	330 (31.0)	400 (37.6)

	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2,004 (100.0)	22 (1.1)	67 (3.3)	72 (3.6)	64 (3.2)	101 (5.1)	281 (14.0)	611 (30.5)	785 (39.2)
남자	979 (100.0)	12 (1.2)	34 (3.5)	40 (4.1)	37 (3.8)	53 (5.4)	134 (13.7)	294 (30.0)	376 (38.4)
여자	1,025 (100.0)	11 (1.0)	32 (3.2)	32 (3.1)	27 (2.7)	49 (4.8)	147 (14.3)	317 (30.9)	410 (40.0)
증감	-85.3	-5.9	-11.2	-7.4	-4.8	-13.2	-31.1	-29.6	17.9
증감률	-4.1	-21.0	-14.4	-9.3	-6.9	-11.5	-10.0	-4.6	2.3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 10.

2024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18천명으로 2023년 대비 19천명 (1.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52.6%에서 2024년 55.8%로 3.2%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은 18.2%에서 19.2%로 1.0%p 상승한 것에 비해, 농가인구의 고령화 수준과 증가 속도가 전체 인구의 고령화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농가·농가인구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농가 내부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더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표 Ⅲ-1-6〉 농가인구의 고령인구 비율(2023년~2024년)

단위: 천 명, %, %p

	2023(A)	2024(B)	증 감 (C=B-A)	증 감률 (C/A×100)
농가인구	2,089	2,004	-85	-4.1
65세 이상	1,099	1,118	19	1.7
농가 고령인구 비율	52.6	55.8	3.2	-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	18.2	19.2	1.0	-

주: \* 고령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 총인구) × 1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 22.

## 나. 육아기 농업인 규모 추산

### 1) 분석 자료

본 분석은 2022년~2024년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와 농림어업조사(농업)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 취업자와 육아기 농업인 규모를 추산하였다. 전체 농

업인 규모와 농업인 개인의 자녀별 연령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역별 고용조사, 농림어업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례를 추출하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와 농림어업조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에 있어서 두 통계자료의 농업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가’는 면적, 판매액, 가축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한편, 지역별고용조사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자를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를 파악한다.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무급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휴직자 등 조사대상 주간의 취업을 기준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 농업인으로 정의된다.

표본추출틀로 사용한 모집단도 상이하다. 지역별고용조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며, 농림어업조사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한다.

지역별고용조사와 농림어업조사 데이터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1-7〉 분석자료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li> <li>* 매반기 조사월(4월, 10월)의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기준</li> <li>* 표본크기 406,366명(‘24년 지역별고용조사)</li> </ul>
지역별 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추출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사용</li> <li>* 조사가 곤란한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 제외</li> <li>• 2차 추출틀 : 1차 추출틀 조사구에서 추출한 9,819개 조사구</li> </ul>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확률비례계통추출 : 조사구 추출</li> <li>• (2차) 단순임의추출 : 가구 추출</li> </ul>
농림어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모든 농가, 임가 및 어가</li> <li>* 표본크기는 농가 46,745가구, 임가 4,920가구, 해수면어가 4,648가구, 내수면어가 696가구(‘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li> </ul>
모집단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li> <li>* 조사시점 기준 농가, 임가 및 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림·어가</li> </ul>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내 가구</li> </ul>

자료: 국가데이터처 통계설명자료서비스.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ocda?statsConfmNo=101067&kosisYn=Y> (2026. 2. 2 인출)를 바탕으로 정리함.

지역별고용조사 데이터에서는 농업 종사자를 분석 단위로 하였으며, 농업 종사자 데이터셋은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에서 농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추출하여 별도 파일로 구축하였다(총 관측치 39,886명). 본 지역별고용조사 분석에서 농업인은 11차 산업중분류 코드에서 '농업'으로 분류되었고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이며, 무급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일시휴직자도 포함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18세 미만 자녀수와 막내자녀연령 변수를 제공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이며 막내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인 경우를 육아기 농업인으로 보았다.

농림어업조사(농업)의 분석 데이터는 '가구원사항'과 '가구사항' 데이터 파일을 가구 단위 식별자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구축하였다. 농림어업조사는 농가 기준을 충족하나 지난 1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농업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가구원사항에서 지난 1년간 농업 종사 기간 변수를 활용하여 종사한 적이 있을 경우 '농업인', 지난 1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음'에 응답한 사례는 '비농업인'으로 분류하여 농업인 여부를 적용하였다. 또한 지역별 고용조사와 달리 자녀 변수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육아기 농업인 변수를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육아기 농업인 산출의 정책적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구의 생계·돌봄 책임 주체이므로, 가구주관계코드에서 가구주 및 배우자에 해당하며 동일 가구 내에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sup>13)</sup>

지역별 고용조사와 농림어업조사 데이터 분석 시에 적용한 육아기 농업인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8〉 분석 시 육아기 농업인 정의

구분	육아기 농업인 정의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고용조사 '농업' 종사자(11차산업중분류코드)로 분류된 자</li> <li>•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무급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일시휴직자 포함</li> <li>• 8세 이하 자녀를 둔 자(막내 자녀연령 기준)</li> </ul>
농림어업조사 분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어업조사 농가 기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li> </ul>

13) 3세대 가구를 포함할 경우 10사례 이내로 근소한 차이가 있었음. 3세대 가구의 경우 조부모-손자녀 관계 파악만 가능하며, 부모-자녀 관계 파악이 불가능하여 부정확한 사례가 포함되므로 3세대 가구 사례를 포함하지 않음.

구분	육아기 농업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li> <li>- 조사기준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li> <li>•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농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li> <li>•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가구주관계코드)이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자</li> </ul>

## 2) 가중치 및 결측 처리

본 분석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표본조사로 모집단 추정을 위해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가구가중값만 제공되어 개인 수준 분석에서 이를 확률가중치 (pweight)로 적용하였다. 가중치 적용에 앞서 결측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업 취업자(39,886명) 중 가구가중값의 결측 관측치가 14,795명(약 37.1%)으로 확인되었다. 가구가중값으로 동일 가구 내 구성원에 모두 가구가중값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가구 식별변수를 기준으로 가구 내에서 관측되는 가구가중값을 동일 가구의 결측 관측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결측을 최소화하였다. 즉, 동일 가구 내에서 가구가중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값을 가구 대표값으로 해당 가구의 결측 관측치에 대입하였다. 이를 통해 결측 관측치 중 12,837명에 가중치가 대체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가중치 결측이 약 4.9%로 감소하였다. 다만, 결측치를 크게 낮추었음에도 유효한 가중값 관측치에 기반한 추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가진다.

농림어업조사는 가구원사항과 가구사항 각각에 가중치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 단위에 따라 해당 가중치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모든 가구원에 가중치가 확인되어 별도의 가중값 결측 처리를 요하지 않았다.

## 3) 분석 결과: 육아기 농업인 규모 추계

2022년~2024년 각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I-1-9>와 같다.

먼저,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농업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농가 수는 2022년 834,560가구, 2023년 853,825가구, 2024년 826,124가구로 산출되었다. 농업인 수는 2022년 약 136만명, 2023년 약 130만명, 2024년 약 124만명으로 감소 추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농가 수는 2022년 22,562가구, 2023년

19,964가구, 2024년 21,155가구로 추계되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농업인 수는 2022년 35,997명, 2023년 28,721명, 2024년 28,017명으로 전체 농업인구 추이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다만, 2023년 감소폭에 비해 2024년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0세 자녀를 둔 육아기 농가 수는 2022년 1,926가구, 2023년 1,721가구, 2024년 1,822가구로 추계되었다. 0세 자녀를 둔 육아기 농업인 수는 2022년 3,174명, 2023년 2,017명, 2024년 2,007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농업인 추이와 마찬가지로 2023년 감소폭에 비해 2024년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9〉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 인구 규모 추계: 지역별 고용조사(2022년~2024년, 하반기)

단위: 가구, 명

구분	2022		2023		2024	
	n	모집단 추정치*	n	모집단 추정치*	n	모집단 추정치*
농가 수	27,056	834,560	27,839	853,825	26,934	826,124
8세 이하 유자녀 가구수*	539	22,562	474	19,964	447	21,155
0세 유자녀 가구수	45	1,926	28	1,721	31	1,822
농업인 수	42,888	1,356,638	41,591	1,302,499	39,886	1,243,025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수*	834	35,997	638	28,721	582	28,017
0세 유자녀 농업인 수	77	3,174	31	2,017	34	2,007

주: \* 모집단 추정치는 관측치(n)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2년~2024년 하반기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2022년~2024년 농림어업조사(농업)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I-1-10〉과 같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농가 수는 2022년 14,411가구, 2023년 11,276가구, 2024년 13,323가구이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농업인 수는 2022년 25,036명, 2023년 19,507명, 2024년 22,281명으로 추계되었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2024년 육아기 농업인 수는 다소 감소하고 농가 수만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조사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농가 수와 농업인 수 모두 2023년에 감소했다가 2024년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0세 자녀를 둔 육아기 농가 수는 2022년 860가구, 2023년 308가구, 2024년 295가구로 추계되었다. 0세 자녀를 둔 농업인 수는 2022년 1,351명,

2023년 460명, 2024년 466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농가 수는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0세 자녀를 둔 농업인 수는 8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2024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농업인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2024년에 육아기 농업인 수가 다소 반등한 것은 농업인 전체 규모의 구조적 추세라기보다 일시적인 청년층(20~30대)의 농촌 유입 및 출산 지표 변화 등이 단기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추론된다.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서는 귀촌이 3년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고, 연령별로는 30대(23.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증가 폭도 가장 컸던 것으로 보고된다(통계청 보도자료, 2025. 6. 24). 이는 자녀 출산 및 육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농촌 유입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층의 농업 진입 관련 정책·사업 측면에서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서 '영농 예정자' 비율이 2018년 42.5%에서 2024년 78.3%로 크게 상승하는 등 농업 배경이 없던 도시 청년의 진입 관심이 확대된 정황이 보고된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 9. 20).

〈표 III-1-10〉 육아기 자녀를 둔 농업 인구 규모 추계: 농림어업조사(2022년~2024년)

단위: 가구, 명

구분	2022		2023		2024	
	n	모집단 추정치*	n	모집단 추정치*	n	모집단 추정치*
농가수	48,742	1,022,797	47,725	999,022	46,745	973,707
8세 이하 유자녀 가구수*	601	14,411	484	11,276	708	13,323
0세 유자녀 가구수	37	860	14	308	13	295
농업인 수	101,866	2,165,626	98,591	2,088,781	95,046	2,003,520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수*	1,045	25,036	845	19,507	974	22,281
0세 유자녀 농업인 수	56	1,351	21	460	20	466

주: \* 모집단 추정치는 관측치(n)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2년~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2년~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상기에 제시한 분석 결과와 같이, 지역별 고용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육아기 농업인 추계 결과는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통계자료의 표본추출틀 자체의 차이와 농업인 정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먼저, 표본추출틀이 다르면 농가 및 농업인 포착 확률이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농림어업총조

사는 조사구가 농가 포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및 농업인 총량 추정이 지역별고용조사와 다르게 나올 여지가 크다. 다음으로, 농가 및 농업인 범위와 육아기 농업인 정의가 상이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별 고용조사와 농림어업조사에서 농가 및 농업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두 통계자료의 구조와 제공하는 변수 자체의 차이로 인해 육아기 농업인을 정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개인단위로 자녀 연령 정보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조사는 '가구주+동거자녀'로 재구성하고 자녀 연령 정보를 결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단일 조사 기반 추정치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두 조사에서 산출된 육아기 농업인 비율을 결합하여 기준치를 추가로 산정하였다.

먼저, 육아기 농업인 규모가 적은 농림어업조사 기반 결과를 하한으로 설정하고, 지역별고용조사 기반 결과는 상한으로 설정하였다. 상·하한 육아기 농업인 비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하였다. N은 농업인 총수이며, Y는 0세, 0~8세 자녀를 둔 농업인 모집단 추정치이다.

$$r_{0-8} = Y_{0-8}/N, r_0 = Y_0/N$$

육아기 농업인의 규모와 비율을 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 비율은 지역별고용조사에서 2022년 2.65%, 2023년 2.21%, 2024년 2.25%로 나타난다. 반면, 농림어업조사에서는 2022년 1.16%, 2023년 0.93%, 2024년 1.11%로 동일 연도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대비 낮은 수준이다. 즉, 두 조사에서 만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수'뿐 아니라 '비율'에서도 격차가 확인된다.

만 0세 자녀를 둔 농업인 비율의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지역별고용조사의 0세 자녀 농업인 비율은 2022년 0.23%, 2023년 0.16%, 2024년 0.16%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조사는 2022년 0.06%, 2023년 0.02%, 2024년 0.02% 수준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 비율과 비교하여 0세의 비중이 더 적게 나타났다. 0세는 대상 자체가 희소하여 소수 사례에 의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서, 조사간 표본 틀 및 농업인 정의의 차이가 8세 이하보다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표 III-1-11〉 육아기 농업인 비율 추계 결과: 2022년~2024년

단위: 명, %

구분	2022		2023		2024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						
총계	1,356,638	100.0	1,302,499	100.0	1,243,025	100.0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35,997	2.65	28,721	2.21	28,017	2.25
0세 자녀 농업인	3,174	0.23	2,017	0.15	2,007	0.16
농림어업조사						
총계	2,165,626	100.0	2,088,781	100.0	2,003,520	100.0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25,036	1.16	19,507	0.93	22,281	1.11
0세 자녀 농업인	1,351	0.06	460	0.02	466	0.02

주: '수'-가중치 적용 모집단 추정치, '비율(%)'-각 연도 총계(농업인 수) 대비 해당 범주의 비중.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2년~2024년 하반기 각년도 원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2년~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2년~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이러한 조사 간 격차를 고려할 때, 특정 조사 결과만을 기준치로 고정하여 정책 대상 규모를 제시할 경우 과대 또는 과소 추정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한 조사에서 산출된 '육아기 비율'을 다른 조사에서 산출된 '농업인 총량'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정의 차이가 증폭되어 기준치가 상한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율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조사별 육아기 비율과 농업인 총량을 동일한 결합계수(결합 가중치)로 결합한 뒤 기준치를 산정하였다. 두 자료를 동등하게 반영하기 위해 결합계수로  $w=0.5$ 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이유는 '비율'과 '분모'를 일관된 규칙으로 함께 결합함으로써 모집단 전체의 차이와 농업인 정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완화하고 절충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기준치는 두 조사에서 산출된 육아기 농업인 비율을 결합하고, 동일 결합계수( $w=0.5$ )로 농업인 총수도 결합한 뒤 '농업인 총수(분모) x 육아기 농업인 비율'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비율 결합 기준치 결과를 보면, 기준치의 총계(결합 분모)는 2022년 1,761,132명에서 2024년 1,623,273명으로 감소하여, 두 조사에서 관측되는 농업인 규모 감소 흐름을 반영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 비율은 2022년 1.91%, 2023년 1.57%, 2024년 1.68%로 산출되어 두 조사 결과의 중간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만 0세 자녀를 둔 농업인 비율도 2022년 0.15%, 2023년 0.09%, 2024년 0.09%

로 산출되어, 농림어업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사이의 절충값으로 제시되었다.

2022년~2024년 3개년 기준치의 평균값을 구하면,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은 29,159명이며, 0세 유자녀 농업인은 1,870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Ⅲ-1-12〉 육아기 농업인 규모 기준치: 2022년~2024년

단위: 명, %

구분	2022		2023		2024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총계	1,761,132	100.0	1,695,640	100.0	1,623,273	100.0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33,545	1.91	26,613	1.57	27,320	1.68
0세 유자녀 농업인	2,610	0.15	1,500	0.09	1,499	0.09

주: 1) 지역별고용조사, 농림어업조사별 육아기 농업인 비율과 농업인 총계를 동일한 가중치로 결합한 후 산출한 값  
2) 결합계수(가중치)  $w=0.5$  적용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2년~2024년 하반기 각년도 원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2년~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2년~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성별 분포는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조사단위와 농업인 포착 방식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고용조사는 개인의 취업상태 중심으로 농업인을 파악하여 여성 농업인의 가족종사 특성 등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농림어업조사는 농가 및 부모 지위를 중심으로 육아기 농업인 집단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기 농업인 전체 규모는 각 자료의 규모 추정치를 비교하여 검토하되, 성별 분포 비율은 농업인 부모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농림어업조사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표본 수가 적은 0세 자녀를 둔 육아기 농업인 집단은 연도별로 성비가 크게 흔들리게 되어, 연도별 성비를 그대로 사용하면 표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어 버리기 때문에 표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년도 통합 성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Ⅲ-1-13〉 성별 육아기 농업인 규모 추계: 2022년~2024년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남	녀	전체	남	녀	전체	남	녀	전체
지역별 고용조사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61.7	38.3	100.0 (35,997)	68.5	31.5	100.0 (28,721)	71.6	28.4	100.0 (28,017)

구분	2022			2023			2024		
	남	녀	전체	남	녀	전체	남	녀	전체
0세 유자녀 농업인	61.6	38.4	100.0 (3,174)	85.3	14.7	100.0 (2,017)	90.1	9.9	100.0 (2,007)
농림어업조사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54.2	45.8	100.0 (25,036)	54.7	45.3	100.0 (19,507)	56.6	43.4	100.0 (22,281)
0세 유자녀 농업인	63.1	36.9	100.0 (1,351)	65.0	35.0	100.0 (460)	63.4	36.6	100.0 (466)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2년~2024년 하반기 각년도 원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2년~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2년~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농림어업조사 2022~2024년 성비와 전체 규모를 이용하여 3개년 통합 성비를 각 연도의 남녀 인원 추정치를 합산한 뒤 전체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중 남성은 55.1%, 여성은 44.9%이며, 0세 유자녀 농업인 중 여성 비율은 8%p 이상 낮은 36.5%로 산출되었다.

〈표 III-1-14〉 성별 육아기 농업인 통합 성비: 2022년~2024년

단위: %(명)

구분	2022년~2024년 통합 성비		
	남	녀	전체
농림어업조사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55.1	44.9	100.0 (66,824)
0세 유자녀 농업인	63.5	36.5	100.0 (2,277)

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2년~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2년~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 2. 육아기 농업인의 자녀돌봄 경험 및 지원 욕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영농가정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이들 가정의 자녀돌봄 특징, 영농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지원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는 2026년 1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차수별로 4명의 부모가 참여하였으며, 임신부 2명, 만3세 미만 영아 자녀를 둔 가정 7명 및 만3세 이상 유아 자녀를 둔 가정 7명 총 16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표 III-2-1〉 FGI 참여자별 특성

참석자 구분	연령	지역	주 영농분야	연간 가구소득 (백만원)***	자녀연령 (만_세)	이용 기관	비고
영1	34	경남	농산물가공	30	0	미이용	농업법인등록*
영2	29	전북	채소	40	(임신중)	미이용	
영3	36	충북	벼, 축산	70	(임신중)	미이용	
영4	39	전북	채소	30	1	미이용	*
영5	34	강원	과수	35	2	어린이집	자녀4명*
영6	39	경남	채소	220	2	어린이집	*
영7**	35	경기	과수	50	0	미이용	
영8	36	경기	채소	60	2	어린이집	자녀2명
영9**	36	경남	특용작물	150	2	어린이집	
유1	40	경기	채소	55	3	어린이집	체험농장운영 *
유2	34	전북	벼, 과수	200	4	어린이집	
유3	35	충남	특용작물	60	3	어린이집	*
유4	32	전남	곡물	40	4	어린이집	한부모가정
유5	31	전남	과수	500	6	어린이집	자녀3명
유6	38	경기	화훼	80	8	초등학교	자녀2명*
유7**	40	전남	벼, 채소	17	5	어린이집	

주: \* 배우자는 비영농인

\*\* 아동의 부(父), 나머지는 모두 모(母)

\*\*\* 공적이전, 자본소득, 추가 근로소득 등 모두 포함한 가구 총소득

### 가. 자녀 돌봄

FGI에 참여한 2세 이상 영유아는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세나 1세의 경우는 아직 어떤 기관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고 FGI 참석자 중 1명의 자녀는 초등학생이었다. 어린이집 일과 후에는 연장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태권도 학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1사례씩 있었다.

#### 1) 양육자

응답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 구성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아동의 모(母)가 양육을 전담하는 형태이다. 출산 이전에는 농업 혹은 농

업 관련 일을 하다가 자녀 출산 이후에는 육아로 인해 영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동의 부(父)가 전적으로 농사를 담당하고 반면 자녀 양육은 모가 전담하는 것이다. 주변에 육아 도움을 청하거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이다.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구 주업이 농업인 경우에 새벽부터 야간까지 이어지는 영농작업을 남편이 담당하고 아동의 모인 아내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가 될 때까지, 혹은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등하원 이전·이후는 모두 모가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에는 모가 농업 일을 그만두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됐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4살, 만 2세고요. 지금 고구마 농사를 시부모님하고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고. 저는 육아를 전담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천으로 귀농을 했을 때의 계획은 남편이 농사를 짓고. 저는 그 고구마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가공하거나, 어쨌든 부수적인 일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략) 시부모님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육아가 도움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제가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8)

저는 밀양에서 농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31개월 남자아이 하나고. 어린이집에 아침에 보내고. 이제 4시 반. 아. 5시 반에 이제 하원을 하고요. 주로 집에는 와이프가 양육을 하고 있고,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주 양육자는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영7)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농업에 전담하게 될 것 같고요. 와이프가 낮 시간동안 맡아서 키울 것 같아요. 긴급 시간 긴급 육아 방법은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처가랑도 너무 멀고, 그리고 어머님도 저랑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봐주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와이프가 계속 좀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육아를 담당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영7)

둘째는, 남편이 농사를 전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부분 부와 모가 동일하게 분담하여 자녀를 돌보는 형태가 이루어졌다. 규칙적 출퇴근이 불가능한 영농업이 아니라 비교적 시간 예측이 가능한 임금근로나 자영업에 아동의 부가 종사하고 모가 농사를 짓는 경우, 부와 모가 양육을 분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 출퇴근 시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가고 올 수 있고 모가 새벽 영농작업을 해야 할 때에나 주말에도 부가 자녀를 돌볼 수 있다. 그러나 낮 동안에는 모가 자녀를 동반해서 농장에 가거나 혹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아기는 이제 올해 6살 됐거든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신랑이 이제 사업을 해서 오후 3시 출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제가 일찍 나와야 될 때가 많잖아요. 농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틈틈이 등원을 시키고, 제가 주로 학원 담당이고. 저희는 주 양육자가 제가 되긴 하는데. 좀 신랑이 엄청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요. (중략) 어린이집 7시 반까지 할 수 있는 연장반을 보냈는데. 그 부모 마음이 또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혼자 남겨 놓기가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일단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고 이제 6시 안에는 데리러 가거든요. 저희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오로지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6).

셋째는, 주변에 가용한 조부모 인력이 있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경우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유형은 아동의 부와 모는 모두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농사일 특성상 새벽이나 늦저녁,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자녀의 조부모에게 일부 의지는 하더라도 대부분 부모가 주 양육자의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응답자 중 경남지역 거주자는 지자체가 조부모 돌봄에 대한 월 40시간 비용지원을 하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조부모님들이 옆집에 사셔서 많이 도와주시긴 하고. 와이프는 직장을 다녀가지고. 보통은 제가 픽업하는 거랑 다 그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9)

막내는 어린이집을 갔다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저녁밥 먹고, 한 6시 반에서 7시에 집에 옵니다. 주 양육은 조부모님과 저희는 같이 하고 있고요. 농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유5)

저는 지금 10개월 된 아이 키우고 있고요. 지금 농업법인으로 가족 농업법인 운영 중이고. 그 가족 농업법인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은 안 보내고 있으면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3)

애기 아빠 아니면 조 부모님 아니면 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누군가는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유3)

사실 딸기 특성상 새벽에 나가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도우미분을 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경남 조부모 돌봄이 이런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새벽 6시에 저희 집에 오시면. 6시 반부터 이제 출근 기록부 그걸 키셔서, 이제 한 달에 40시간이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실제로 어머님이 계시는 시간은 더. 일요일도 저희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더 많은데. 이제 40시간 인정받고.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5)

##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조부모 등 일상적으로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참여자가 지리적 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농촌 지역 특성상 아이돌보미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대기가 길고 임박해서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지역 아이돌보미의 자질에 대해 신뢰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읍지역에 비해 지리적 거리가 먼 면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돌보미 신청이 어렵고, 특히 영농 특성상 새벽에 돌봄 인력이 가장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진도도 엄청 시골이고, 그 돌봄 해주시는 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읍 같은 그런 곳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면 단위이다 보니까, 멀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돌봄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골라서 가요. 그분들은, 오래 할 수 있고, 조금 편해 보이는 곳을 골라서 가서서, 저는 아예,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해본 적도 없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필요할 때는 거의 사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유4)

육아 돌보미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저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도우미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좋은 분을 찾는 것도 어렵고, 정말 인기가 있으신 분들은 모시기도 어렵고 해서 좀 잘 모르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분한테 맡기기가 마음이 별로 불편해서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유3)

등하원 도우미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딸기 특성상 저희가 새벽에 나가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도우미분을 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우미 자체도 적고 시간대가 저는 새벽 6시부터.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안 돼서... (영5)

아이 돌봄 서비스는 작년 추석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취소가 너무 많고, 공지도 못 받고 취소는 한 20번 정도 취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왜 취소가 되는지도 안 알려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C시에는 아이 돌봄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데도 배정이 너무너무 안되고, (중략) 선생님이라고 교육을 받고 오셨다고 하시는데도 물을 데우는 법도 모르시고, 애들을 씻기는 법도 모르시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다 모르셔서, 제가 써놓고 가면 그걸 물어본다고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기가 좀 힘들기도 했고... (영3)

## 나. 출산·육아와 영농 운영

### 1)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영농 공백

출산과 바로 이어지는 육아로 인해 이전까지 종사하고 있는 영농 작업을 중단해야 했는지,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었는지,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지를 질문하였다.

다수의 응답은 출산과 이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최소 1년의 기간은 영농 일에서 손을 떼야 했다는 데 모아졌고 결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일부 시간 돌보미를 쓰면서 일을 병행하거나 매우 이른 시기(생후 50일)부터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일을 중단했다는 경우에도 대부분 인력을 고용해서 영농 작업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보이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있거나 고용이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출산 모의 몫까지 더 많은 일을 나누어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1년 이상 농사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거나 업종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출산과 이후 육아는 거의 1년의 공백기가 필요하고, 이 기간 월 300만원까지 인건비로 인한 추가 지출,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는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저는 영농 현장에서 일단 빠지고요. 왜냐하면, 아기 낳고 거의 1년 동안은 일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처음에 2명을 고용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계절 근로자까지 한 명 더 추가로 고용을 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이 나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5)

애기 낳고 1년까지는 조금 일하는 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하고, 1년은 농장이 좀 많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쓰기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급할 때 남편이 한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었어요..제가 100일까지는 집에서 일단 몸조리하는 데 좀 집중했고요. 농사일이 아무래도 좀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100일 좀 지나고 나서는 하루 나가서 몇 시간은 조금씩은 했었어요. (영6)

도와주시는 분도 안 쓰고 친정엄마가 해 주셔서 한두 달 쉬다가 이제 또 나갔죠. 나가서 일 바로 했고. 그런데 아기가.. 예고를 하고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내가 잡아놓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기를 봐야 하는 그 상황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뭐.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거의 한 4~50%? 절반 이상 넘게 줄었어요. 일을 엄청 많이 줄었어요. 품목도 줄이고. 이제 시간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도 그 소득은 크게 회복되지 않은. 그 이미 출산 전과 달리. 출산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모아둔 돈 까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4)

저는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출산이랑 원래 육아하기 전에는 와이프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뭐, 이제 배달을 주로 가고, 와이프가 선별하고, 이제 외국인들 관리를 하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선별을 못 하다 보니까. 그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이제 동네

이모나 지인들, 외국인 데리고 와가지고 선별시키고 하니까. 한 300만원 정도 추가 지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애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도. 하면 되긴 되는데. 애가 자주 이제 입원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또 좀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업 주부로 돌아섰고. 완전히 그냥.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한 명 새로 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지출이 좀 들어가 가지고. 네. (유7)

영농. 일단 저는 중단하지만, 외국인이 그래서 두 명을 계절 근로자를 썼어요. 근데도 외국인으로만 농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리? 관리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래 제가 한몫을 했으면. 인건비라는 게 한몫이 빠져나가 한몫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외국인을 두 명을 두다 보니까. 매출로도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매출인 것 같아요. 네. 인건비 지출이 커졌어요... 평균적으로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근데 그게 1인 한 명이니까, 2명이면 거의 300만원 정도. (영4)

아이를 출생 후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어려서 애를 낳아가지고... 출산하고 저는 좀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서. 딱히, 막 육아로 인한 농업 공백이 있진 않았어요. 한 50일 정도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내는 부모 마음이 좀 편치 않죠. 좀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 농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5)

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농업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거나 일을 완전히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사실은 저는 딱 아이 3개월만 돌보고 나가서 일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애가 그렇게, 남한테 맡기고 그럴 정도가 안되더라고요. 너무 육아를 쉽게 생각했었던 제가, 생각이 잘못됐었지만. 저는 귀농해서 저 혼자 하는 농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거를 그냥 포기를 많이 해 왔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좀 포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둘째 가질 생각은 추어도 못하죠. 이렇게 육아가 내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서 출산을 한 거여 가지고. (유1)

농사 자체가 여러 명이 붙어서 해도 시간이.. 일이 많다 보니까. 여유가 생각보다 없었고. 그러다 보니 육아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육 기관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육아를 다 하면서 아니면 산후도우미를 쓰고 그렇게 했었고. 그 시기에는 아예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장까지)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차로도 45분, 50분.. 제가 아이를 보면서 그 이동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워져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생산자로서 이제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마케팅이나 아니면, 추후에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려해 보고 있어요. (영8)

요컨대, 영농 가구에서 자녀 출산으로 인한 공백은 1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을 하는 여성의 일을 대체하는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하고 소득에서의 손실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인력 고용 시 추가적인 지출 비용은 약 월 30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 2) 개선을 위한 요구

먼저, 출산 시 지원되는 영농도우미에 대해 지자체별로 예산 여유에 따라 사용이 제한적인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불만과 농번기 중심의 90일 사용이라는 기간 또한 불충분하는 의견이 있었다.

출산 전후 90일에 영농 도우미 쓸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반에 어떤 분이 사용해서서 예산이 없는 문제로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전후 90일 인데. 이게 이제 그 농번기 안에 들어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중략) 약간 이런 제한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와버리니까 일을 못 하는데. 그게 뭐 농번기에.. 또 아이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계획적으로 생기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90일이라는 제한을 좀 1년까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영2).

영농 도우미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완전 농사 쪽에만 도움을 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것도 예산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고. 좀 약간 빡빡한 부분이 있고. 이게 90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90일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1)

차라리 그러면 농가 도우미가 조금 기간이, 아이돌보미처럼 좀 이렇게 좀 길게 좀 가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6)

둘째, 새벽시간 영농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새벽에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육아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아이돌보미의 경우 늦게 시작해 최대 4, 5시면 종료되는 현재의 이용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제 보육 또한 새벽에 이용이 불가능하고 기관까지 이른 시간에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불편함이 있어 가정 방문형 도우미의 확충과 개선에 대한 요구는 높았다. 한편 아이돌보미가 안되면 영농도우미가 새벽에 일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새벽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하절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벽에 5시부터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부부 중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둘 다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일이 많으면. 이거는 시간이... 저희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업인 특화라면, 새벽 보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2)

시간제 보육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짐을 너무 많이 싸서 보내야 하는 부담스러움과 제가 바쁠 때는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불편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가 4시간, 5시간 이상 쓰려고 시간을 체크하면 무조건 취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너무 짧고. 아침에도 8시 반 정도부터 부를 수 있어요. 그 시간부터 막 4시, 5시에 마쳐주세요..차라리 저는 9시부터 6시까지만이라도 좀 풀로 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3)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를 출하할 때가 새벽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3시 반부터. 3시 반이나 4시쯤부터 일어나서 9시까지가 저희가 출하하는 그 과정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인 투 식스여가지고. 그 시간대 새벽 보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맨날 필요한 게 아니예요. 저희도 한 달에 많이 나가야 두 번, 세 번 정도여서. 이제 한 5시간 정도 넉넉하게 새벽 보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1)

저희 지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했을 때도 그렇고, 아이가 어릴 때도 그렇고. 농가 도우미나 아니면 새벽에 이렇게 맡길 수 있거나. 이러면 그게 참 좋겠다. 그게 참 아쉽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7시까지의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냥 아이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냥 돌봐주실 분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봐주시면 그냥 특정 경우에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 주실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영6).

셋째는, 등하원 도우미의 필요성과 조부모 육아에 대한 지원 제안이 있었다. 농촌에서 농번기 등 영농 집중 시기에 하원 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맞이하려 가는 것이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쉽지 않으므로, 등하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많은 경우 조부모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자녀 돌봄을 위해 이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빌어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데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여기는 해남인데. 그 육아 등하원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이 돼서 시간당 3천 원 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인력이 목포에서 와야 하는데. 이제 거리상으로 해남에 배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부모님과 같이 육아를 하는데. 조부모님들이 거의 등 하원이나 케어를 조금 더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농사도 짓기도 하고 해서. 그런 조부모의 육아에 대해 주는 지원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본업을 조금 등한시키고 저희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다 보니까. (유5)

## 다. 육아 지원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 급여는 제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FGI 각 차수별 4명씩 참석자 중 최소 1명 이상은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었거나 최근 듣게 되었다는 정도로 답하여, 2019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나 아직 더 확실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저는 요거 (육아지원 제도) 5개 중의 4개는 원래 알고 있었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유7)

아예 몰랐다가요. 작년에 청년농에서 알려줘 가지고 처음 알게 됐고. 이게 신청이 가능하면 저도 신청을 하고 싶고요. (영1)

그러나 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여러 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령하지 못한 이유로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다 신청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 농업인이어서 해당 제도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농업법인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타났다.

알고는 있었는데 신청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이거 기억이 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아끼 보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잊어버려서 신청을 못 했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PC로만 할 수 있는 서류다 보니 확인하고 또 이렇게 작성하고 이래야 돼서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제가 못 한거니까. (영2).

저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 아기 낳고 집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되게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면사무소 이런 데 가서 아기랑 나오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막. 또 아기 정신없이 또 육아하다 보니까. 그 받는 시기가 지나 있었어요. (유3).

출산 전부터 저는 받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제가 법인 대표자라서 못 받았거든요. 그 조건에 법인 대표자는 또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는 농업법인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법인이지만, 매출이 엄청나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면..마이너스가 나는 법인이라고 뜨는 법인인데. 매출에 상관없이 그냥 법인 대표자를 안 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3)

농업인이라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었어요. 소득이 잡히는 게 없어서 뭘 해줄 수가

없다고. 농업인은 안 된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4).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아이가 신생아인 시기 모가 단독으로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에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좀 더 홍보를 하고 간소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농경영자로 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위의 사례들 중 농업인이라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출산 예정인 영농인들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 대표자는 급여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가에서 소규모 자영업(체험농장)을 하고 있는 면담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보다 명료한 선정 기준이 공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농업인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과세, 면세 다 포함된 체험 농장 서비스업이요. (유1).

## 2) 기타 현금 및 서비스 지원: 부모급여, 지자체 출산장려금, 산후도우미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에 영농가구 영유아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으로서, 부모급여(22년 출생아 이전은 영아수당)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있다. 부모급여는 제도 도입 이후 출산한 모든 응답자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대부분 자녀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비하고 아이돌보미 비용으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 넷째 낳고 해당되어 가지고 받았었는데요. 보통 아이. 아이 돌보미를 제가 길게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 비용으로 나가고. 뭐. 아이 용품 사고. 네. 아이 뭐 먹을 거 사고 그런 걸로 다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영6).

(부모 급여가 있음으로 해서 육아에) 도움 많이 받은 셈이죠. 그래도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 저의 지출은 그래도 조금 굳은 셈이니까요. (유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시 지급하고 있는 통칭 출산장려금은 지역과 출산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경우 연 100만원~600만원까지 수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첫째아이의 경우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광역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50만원이 더해지기도 하였고, 인구감소가 큰 전남 지역 농촌 지방의 경우는 첫째이더라도 500만원을 받기도 했고 강원 홍천에서는 넷째에 대해서 60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저도 23년도에 100만원 지원된다고 해서, 출생하고 나서 50만원을 먼저 선지급하고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돌 지나면 다시 제가 신청을 해서 나머지 50만원을 받아서 총 1년 동안 100만원을 받았습시다.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첫째 때 3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5)

진도도 첫째 낳으면 500만원인데. 그걸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100만원씩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사이에 주소를 이전하면은 못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4)

네. 저 받았었고요. 여주시에서 첫째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었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을 받았고. 경기도에서는 50만원을 줬었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줘가지고. 그걸로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1)

셋째는. 횡성이 지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셋째는 원래 30만원씩, 3년간 매달 주는 건데. 제가 중간에 이사를 해가지고. 6개월만 받고 홍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넷째를 홍천에서 낳으니까. 600만원을 3년에 나눠서 200만원씩. 세 번으로 주시더라고요. (영6)

그 외에 첫 만남 지원금 200만원의 받아 초기 산후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고, 지자체(전남)에서는 별도로 초등학교까지 인당 월1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도움을 받는다는 정보도 있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현금지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산후도우미에 관해서는 대부분 사용했다고 하였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기본 지원이 2주이고 이후에는 사용자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3주를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희는 기본이 2주인데 이제 최대 3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3주 사용했는데. 제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3주 동안 10만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영5)

(아이가 넷이라) 네 번 다 이용했었어요. 되게 감사한 제도예요. 이렇게 집으로 방문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저도 기본이 2주인데. 첫째 때는 그냥 2주 썼었고요. 그때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다 연장해서 3주 아니면 4주씩 이렇게 썼었어요. (영6)

2주까지는 무료. 거의 이제 무료로 받았었고. 근데 3주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더 추가하고. 네. 그때 받았어요. 제 남편이 이제 계속 바쁘니까. 어느 정도 도우미가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영8)

이건 진짜 쓰고는, 솔직히 쓰면 1년 내내 쓰고 싶은 그런 건 있어요. (영2)

반면 농가도우미는 제도를 몰랐다가나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아 쓰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고 산후도우미랑 중복되어 하나만 썼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농가도우미를 사용한 경우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가도우미는 (FGI에서)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영8)

농가도우미는 저희 지역에 해당이 안 돼서 이용을 못 해봤거든요. (영6)

저는 영농도우미를 써가지고. 산후도우미를 쓰지 않았어요. 시기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영농도우미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산후도우미 이모를 부를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그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1)

농가도우미 요걸로, 농어가도우미 이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유7)

## 라. 농업인 육아수당(육아휴직수당) 도입 관련 의견

### 1) 농업인 육아수당 필요와 지원 방식

농업인 육아수당 도입에 대한 의견과 그에 관련해서 고용보험 가입, 소득신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 제도에서 농업인은 10억까지 면세이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담 결과를 보면, 육아수당을 도입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를 위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의향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면 이걸 사전에 알아야지만 약간 (소득)신고하기 좋게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중략)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소득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영6)

만약에 고용보험이 가능하다면 저도 고용보험 드는 게, 네, 직업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만약에 들 수만 있다면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영4)

개인 사업자의 좀 약간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이 농업 자체가. 1월 달에 얼마를 벌고, 11월 달에 얼마를 벌고, 하는 건데.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육아 지원 확대된다면. 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고용보험 가입 말고, 그냥 별도로 육아 지원 제도가 차라리 생기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유7)

한편 육아수당 금액의 적정 예로서 일부 전문가 간 고려되고 있는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아휴직급여에 대체되는 수당이라 이해한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최저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 80~90% 수준은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안된 금액은 너무 소액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게 임금의 80%에서 100%로 들었거든요. 근데 50만원이면 솔직히 얘기 기저귀 사고, 분유 사면 끝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일을 아무것도 못 하고,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비해. 약간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이라도 주시면 저희 밑에 후배들이 이제 또 아기 낳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사용하겠죠. (유3)

만약에 받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급여, 최저시급으로 받는 사람들의 임금의 80~90%를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으로 줘야지 왜 50만원, 3개월밖에 안 주는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은 뭐 6개월. 1년 동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임금의 80~90%를 받고 있는데. 이거 하고서 애 낳으라는 말은 절대 안 되죠. (유1)

## 2) 농업인 소득 신고

고용보험 가입과 연관된 소득신고에 대해서, 농업인도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현재 소득 인정액이 없어 농협 대출 시에도 큰 규모 금액이 가능하지 않아 영농 확장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저는 (고용보험에) 돈을 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소득이 인정되면. 뭐, 지원 사업이나 대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영9)

아파트 대출할 때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그 우리 농협 같은데 가면 저희는 무직자라 해 가지고 그냥 뭐 2천만원, 3천만원밖에 대출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우

리 소득을 잡아준다고 하고, 직장인처럼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뭐 100% 고용보험 가입하는 게 맞죠. (유7)

저희는 10억까지 이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소득을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근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소득은 내가 내고 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한다고 하면 좀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소득 구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다라는 게 좀 돼서 농협에 가더라도 이런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고. (유5)

그러나 농업인 특성상 소득 범위에 대한 규명이 불분명할 수 있고 가족경영 또는 고용인 채용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신고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농업인 소득은 매출액 중심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이었다.

저희는 이제 가족 회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 신고를 하려면 고용을 해야 돼요. 이게. 매출뿐만 아니라 어쨌든 비용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전체 소득으로 잡으려면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내용이 좀 사실 많아요...그걸 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소득 신고가 아니라 매출 신고로 하면은 좀 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돈이랑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랑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매출만 신고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이 크지 않다면은 관찮을 것 같아요. (영8)

저도 이제 매출 신고를 통해서 뭐,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만약에 좀 간편하게 저희가 매출로 신고를 해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영5)

한편 별도의 소득 신고보다는 국민연금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여 소득액을 대체하고 고용보험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그 건보료를 기준으로 혹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농업인의 경우에 소득이 딱히 잡히는 않아요. 같은 농업인이어도 재산에 따라서 건보료를 다 다르게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를 되게 조금 내요. 재산이 조금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는 좀 확인이 어려울까요? 나라에서 이미 측정. 재산으로 측정돼 있는 그런 국민연금 이런 걸로 구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2)

### 3)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한 가지로 수렴되지는 않았다. 고용보험이 과연 농업인에게 적절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농업을 평생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자녀 또한 모두 키운 입장에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장점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통해 농업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내가 이걸 가입하는 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아마 따져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연금 내고 있지만 연금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매달 이렇게 내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거를 얼마나 돌려받을까. 약간 이런 생각. 아마 많은 분이 그런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처럼 조금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유3)

저는 아마 따져볼 것 같아요. 저도 국민연금은 딱딱딱 내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국민연금으로 내 노후 얼마나 받을지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죠. 근데 지금 고용보험도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내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은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용보험도 솔직히 의무가 아니라면은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고. 출산도 둘째는 계획에, 현재는 없어가지고 굳이 저는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1)

저도 둘째 생각 없고. 이제 이 아이 하나 키우고 끝낼 건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신랑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저도 말씀.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농사만 지을 거라서, 실업급여 받을 일도 없고. 내가 다달이 이거를 죽을 때까지 내야 돼. 근데 내가 그 년 만큼의 돈을 절대 못 받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유3)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저희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거 만약에 제가 둘째를 출산한다라고 하면 출산 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걸 저희가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저희는 혜택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안 낼 것 같습니다. 이거 보험을. (영5)

이게 참 농업이 어려운 게. 다들 농사꾼이라고 하는데. 하는 직종도 너무 다르고, 규모도 너무 다르고. 영세하신 분부터 기업형인 분까지 너무 많아서 그 스케일 별로 차이를 좀 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육아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의해서 아동 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명확히 머릿속에 결론이 잘 안 나긴 합니다. (영7)

그러나 반면 사고로 인해 농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출산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국가가 납부액의 일정 정도(예. 50%)를 지원해준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느 쪽 의견이 우세하다기 보다는 다양하게 열린 상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월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소 4만원 수준

이 적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은 한 달에 4만원 정도는 부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더 괜찮은 거는 50%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농업인한테 혜택을 더 주시면은. 네. 그렇게 말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영9)

저는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고용보험 가입할 거고, 소득 신고도 할 의향이 너무 많아요. 참만해요. 농업인도 그렇게 소득 신고하고 하면서 좀 직장에 일반 도시 근로 자랑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농업 하다가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뭐 실업급여도 솔직히 안 주잖아요. 근데 고용보험을 하고 내가 농업을 했는데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걸 해보고 싶어 했을 경우에 좀 다른 차별을.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인들은. 그렇다 보니까. 도시 노동자랑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유4)

저는 만약에 농업인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입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농사를 만약에 쉬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있다면 저는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영6)

어. 근데 사실은 지금 저는 수입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자영업자. 지금 월 보험료. 이거를 낼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없어 가지고. 내는 게 더 지금 현재는 저한테는. 지금 저의 수입 대비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1)

고용보험이 지원된다고 해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면에, 이제 필요하신 분은. 어쨌든. 고용보험이든. 국민보험이든. 50%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6)

## 마. 영농 가구의 육아지원 요구

본 연구의 FGI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영농 가구가 희망하는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조부모 등 돌봄을 도와줄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발생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남편이 부재한 경우 등 자녀를 돌볼 사람이 모 혼자일 때 더더욱 필요하며, 시간제보육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장거리 이동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였다.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저는 가

장 힘들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은 이제 뭐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껴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남편이 부재했을 때 그리고 제가 육아로 많이 힘들 때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돌봄,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8)

사람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지만 사람을 구했을 때 그런 도우미 선생님분들한테도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구하는 저도 부담스럽지 않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시간제 보육, 이런 것도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는데, 아예 알아보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산간 지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도 군산사이긴 해도 제가 군산시까지 나가려면 30킬로를 가야 되니까...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분들이 멀리 왔을 때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결국 저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지레 겁먹고 쓸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너무 멀어서. (유3)

둘째, 어린이집이나 학원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경우 등하원을 맡아주는 돌봄 혹은 통학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면지역에서 읍까지 통학차량이 없이 등하원을 시켜야 할 때 시간소요가 크므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차량 및 도우미, 혹은 교통비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돌봄이분들은 그냥 집에 와서 봐주시는 거지 등하원 동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돌봄 해주시는데 그냥 본인 차로 좀 이렇게 오셔서 아기 등원 준비 도와주시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시는 등원이라 끝나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돌봐주시는 그것까지 좀 추가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이제 멀다 보니까 얘기 등하원 시키는 것도 솔직히 일이에요. 차가 안 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등하원을 동행해 주고, 해주는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유4)

제가 태권도를 한번.. 이번 달에 간다고 그거 가봤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차가 안 오더라고요. 학원 차가. 그렇게 시골에 사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학원 보내기도 힘들어요. 도시에 가서 그렇게 5층까지 데려다주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픽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시골에서는 그러기가 힘들니... 그래서 그런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조금 더. 농촌의 아이들도. 그래도 멀리서라도 학원 다닐 수 있게... 저는. 애를 그렇게 라이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보낼 수 없구나. 라는 현실을 알았거든요. (유1).

셋째, 체험과 문화적 경험의 기회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농촌의 영유아들이 체험 교육,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장거리로 이동하여 이웃 도시의 시설을 이용해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이동 비용 등을 고려한 체험바우처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외된 농촌 지역으로 방문하여 문화적 체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농촌에도 어

느 정도 수준의 담보된 공공 키즈카페가 있다면 육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이러한 각종 시설이 예약제로만 가능하여 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농가에서는 사전 예약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애 때문에 도시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애한테 문화생활을 즐기게 해 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본인은 여자아이다 보니까 발레 학원도 가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말이라도 좀 찾아오는 문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무리 소수여도.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일이 있으면 아이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우스 안에 있거든요. (유2)

저희가 농촌 지역이지만,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군 연합 어린이집 운동회. 이런 거하면 애들만 몇백 명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 왔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도 아이들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키즈 카페도 없어요. 그런 거 좀 크지 않아도 생기면 좋겠다. 맨날 이런 생각 하고. (유3)

저희는 거의 당일날. 어, 오늘 아기랑 놀러 갈 수 있겠다. 이런 때가 많은데..다 예약제 운영이기 때문에 오늘 갈 수 있나? 하고서는 사이트에 표 찾아보면 예약 마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한 번 밖에, 딱 한 번밖에 못 가 봤거든요. (유3)

이제 아기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골이라 없다 보니까 항상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말마다 애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이제 뭐 시간적으로나. 이제 아무래도 교통비도 더 들고 하다 보니까. 체험비 바꾸쳐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4)

넷째, 농가도우미의 효용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출산 시 지원되는 농가도우미를 더 연장(1년~1년6개월)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아이돌보미 사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도우미를 확대하여 새벽에도 농업 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가 도우미도 약간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아이 돌보미는 소득 판정을 받고,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농사하면서 인력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그러니까 만약에 새벽에 아이 돌보미 선생님 이렇게 오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농가 도우미를 신청해서 새벽에 이렇게 일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6)

농가 도우미인데. 지금은 90일로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 낳고, 이제 임

신 기간 포함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이게 뭔가 지원이 돼야지. 저는 제가 주 양육자이자 농장도 제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장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부모님한테 이제 맡기다 보니까 소득 부분에서도 쪼개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걸 좀 줄이는 차원에서 농가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반 정도는 해 주시면 출산 임신부터 출산해서 애들 케어하는 데까지 충분히 좀 효과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5).

다섯째, 출산이나 육아기 동안 귀농 자금 대출이나 청년 창업농 대출의 상환 유예를 요구하였다. 출산, 육아로 인해 농업 생산성은 감소하여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지속되므로, 이를 일정 기간 유예시킴으로써 농업을 하는 영농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정책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가 지금 귀농 자금을 받아가지고. 거치하고 지금 상환한 지 3년 차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계산을 제가 못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빚쟁이들은 애를 낳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 출산을 하고서 상환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 육아하면서 많이 포기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 모아둔 돈과 그리고 끌어모아서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번 돈 아껴써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상환은 하고 있었는데... 애가 스스로 커 주는 게 아니고 엄마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환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라에서 정해준 귀농 자금. 이것도 혜택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좀 유예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1)

기타 의견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강화, 도우미 인력을 구하기 힘든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후도우미와 같은 돌봄 지원 인력 사용 기간의 확대(최대 1년 6개월)를 요구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농촌에서의 육아 가정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의 지속적 관심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3. 농업인의 소득 특성 및 소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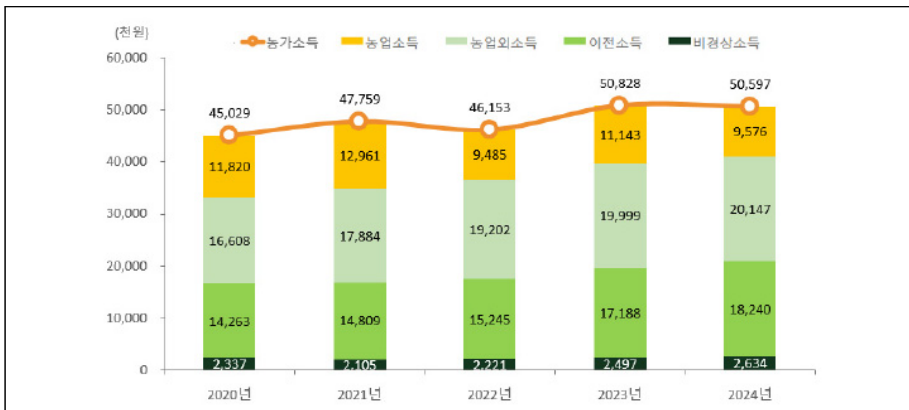
#### 가. 전체 농업인의 소득 특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농가소득의 총규모와 소득원별 구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2020년 연간 농가소득은 약 4천5백만원이었으며 다소 부침이 있었으나, 2023년에 연간 농가소득이 약 5천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2024년에는 소폭 감소(-0.5%)가 있었으나 여전히 5천만원 이상의 연간 농가 소득을 보였다.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보다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0~2024년 간 계속 유지되었다. 연간 농업소득은 2020년 11,820천원에서 2024년에는 9,576천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2020년 16,608천원에서 2024년 20,147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소득도 2020년 14,263천원에서 2024년 18,240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2020년 2,337천원에서 2024년 2,634천원으로 소폭 증가를 보였다.

[그림 III-3-1] 소득 종류별 농가소득 추이(2020년~2024년)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p.41.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았다. 농업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구성되며, 사업외소득이 겸업소득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외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0.7%로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겸업소득은 -3.1% 감소한 반면, 사업외소득은 2.7% 증가하였다.

이전소득은 2024년에 전년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2024년 공적보조금은 17,435천원으로 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4년 공적보조금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반면, 사적보조금은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상소득은 2024년 전년 대비 5.5%가 증가하였다.

〈표 III-3-1〉 농가의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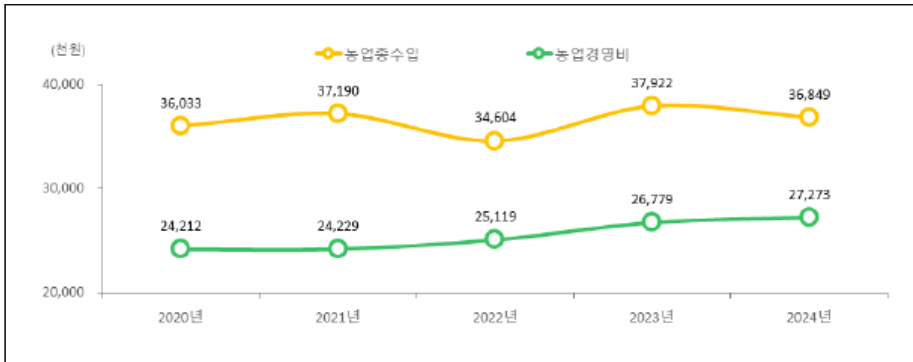
단위: 천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성비	(23/22)	(24/23)
농업외소득	16,608	17,884	19,202	19,999	20,147	100.0	4.2	0.7
겸업소득	4,930	5,507	6,296	6,767	6,559	32.6	7.5	-3.1
사업외소득	11,679	12,376	12,906	13,232	13,589	67.4	2.5	2.7
이전소득	14,263	14,809	15,245	17,188	18,240	100.0	12.7	6.1
공적보조금	13,554	14,017	14,416	16,271	17,435	95.6	12.9	7.2
사적보조금	709	792	829	917	805	4.4	10.7	-12.3
비경상소득	2,337	2,105	2,221	2,497	2,634	-	12.4	5.5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p.43

다음으로 농가의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농업총수입은 202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20년 36,033천원에서 2024년 36,849천원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2020년 24,212천원에서 2024년 27,273천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비용 상승과 농업의 순수익 감소는 전체 농가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계의 체감 여건과 영농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2〕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추이(2020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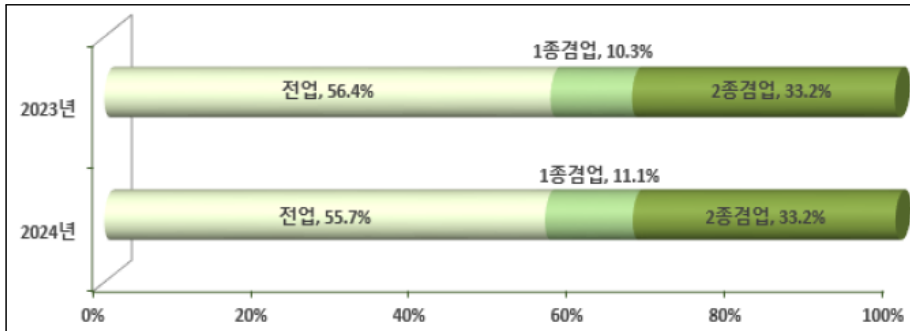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p.42.

2023년과 2024년의 전업, 겸업별 농가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겸업이 유형은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1종 겸업과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2종 겸업으로 구분된다.

2023년 전업농가는 56.4%, 1종 겸업농 10.3%, 2종 겸업농가 33.2%였으며, 2024년에는 전업농가 55.7%, 1종 겸업농가 11.1%, 2종 겸업농가 33.2%로 나타났다. 즉, 전업농가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고 1종 겸업농가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2종 겸업농가 비중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III-3-3] 전·겸업별 농가 구성비(2023년~2024년)



주: 1종 겸업: 농업수입 ≥ 농업외수입, 2종 겸업: 농업수입 < 농업외수입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p.11.

전업, 겸업별 농가수지를 보면, 2024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 42,463천원, 1종 겸업농가 52,437천원, 2종 겸업농가 61,041천원으로, 전업농가의 소득이 가장 낮고, 농업외수입이 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대비 증감률은 보면, 전업농가는 -2.4%, 1종 겸업농가는 -2.6% 감소하였으나, 2종 겸업농가는 1.7% 증가하였다.

2024년 자산과 부채를 보면, 전업농가의 자산은 611,233천원, 부채는 32,832천원이며, 1종 겸업농가의 자산은 567,007천원, 부채는 39,449천원이다. 2종 겸업농가는 자산 638,190천원, 부채 63,252천원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동시에 부채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보인다. 이는 농가 유형에 따라 소득원 구성뿐 아니라 자산 및 부채의 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3-2〉 전·겸업별 농가수지(2023년~2024년)

단위: 천원, %

	농가소득			2024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가계지출	자산	부채	
전체	50,828	50,597	-0.5	39,317	616,185	45,016	
전업농가*	43,525	42,463	-2.4	34,002	611,233	32,832	
겸업농가**	1종 겸업	53,815	52,437	-2.6	37,055	567,007	39,449
	2종 겸업	59,994	61,041	1.7	47,222	638,190	62,252

주: \* 전업농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농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1종 겸업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 > 농업외수입인 농가  
 • 2종 겸업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 < 농업외수입인 농가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p.46.

### 나. 육아기 농가의 소득원과 매출액 분석 결과

2024년 농림어업조사(농업) 원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농가와 육아기 농가(8세 이하 자녀를 둔 농가, 0세 자녀를 둔 농가)의 전·겸업 분포 및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를 도출하였다.

먼저, 전·겸업 분포를 보면, 전체 농가는 전업농가 50.0%, 1종 겸업 12.7%, 2종 겸업 37.3%로 나타났다. 반면, 8세 이하 육아기 농가(2,652가구)는 전업농가 27.1%, 1종 겸업 19.0%, 2종 겸업 53.9%로, 2종 겸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0세 육아기 농가(56가구)는 전업농가 71.4%로 전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아기 농가의 전·겸업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3〉 육아기 농가의 전·겸업 분포

단위: %(가구)

구분	전업농가	1종 겸업	2종 겸업	계
전체	50.0	12.7	37.3	100.0(95,046)
농가구분				
8세 이하 육아기 농가	27.1	19.0	53.9	100.0(2,652)
0세 육아기 농가	71.4	7.1	21.4	100.0(56)
그 외 농가	50.7	12.5	36.8	100.0(92,338)
$\chi^2(df)$	583.5480(4)***			

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  $p < .001$ .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8세 이하 육아기 농가는 2,000-5,000만원 미만(19.1%), 5,000만원-1억원 미만(12.9%), 1-2억원 미만(7.4%), 2-5억원 미만(3.8%), 5억원 이상(1.6%) 등 연간 판매금액이 높은 구간의 비중이 비육아기 농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0세 육아기 농가의 판매금액 분포는 2,000-5,000만원 미만이 30.4%, 2-5억원 미만이 21.4% 등 특정 구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지만, 해당 집단은 표본(56가구)이 매우 작으므로 분포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8세 이하 육아기 농가는 겸업, 특히 2종 겸업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판매금액 규모가 큰 구간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육아기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금액

단위: %(가구)

구분	비육아기 농가	8세 이하 육아기 농가	0세 육아기 농가	전체
계	100.0(92,338)	100.0(2,652)	100.0(56)	100.0(95,046)
농축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미만	9.7	8.2	8.9	9.7
120~300만원 미만	12.5	9.5	0.0	12.4
300~500만원 미만	17.8	11.3	0.0	17.6
500~1,000만원 미만	14.5	10.4	12.5	14.4
1,000~2,000만원 미만	12.2	10.0	7.1	12.1
2,000~5,000만원 미만	14.7	19.1	30.4	14.8
5,000만원~1억원 미만	7.4	12.9	7.1	7.5
1~2억원 미만	3.2	7.4	7.1	3.3
2~5억원 미만	1.4	3.8	21.4	1.5
5억원 이상	0.6	1.6	0.0	0.6
판매없음	6.1	5.9	5.4	6.1
X <sup>2</sup> (df)	724.0031***			

주: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총 판매금액  
 2) 판매금액은 순 수익금이 아닌 판매한 총금액  
 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 p < .001.

## 다. 농업인의 소득파악 자료 검토

### 1) 농업분야 소득 비과세

지금까지 농업분야 소득세 체계는 과세·비과세 규정이 혼재되어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범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다수 농업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소득신고의 유인이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2015년 세법 개정 이후에는 작물재배 소득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되는 예외가 존재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또한 비과세의 적용 범위는 농업 내부에서도 업종·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작물재배업 중 곡물·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과세 제외로, 채소·화훼·종묘 및 과실·음료용·향신용 작물재배업 등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이며, 축산업도 농가부업 규모 이하(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이내)는 비과세이다(임소영 외 2022: 15~17).

농업인 비과세가 농업인에게 신고·기장 의무가 전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인의 다수는 겸업·부업을 병행하며, 농업인도 농업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임소영 외 2022: 17).

〈표 Ⅲ-3-5〉 농업분야 사업소득 비과세·과세 항목

농업 분류	과세내용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 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주: 어업과 임업은 과세 대상임.  
 자료: 임소영 외(2016); 임소영 외(2022: 17)에서 재인용.

## 2) 농업인 소득 파악의 필요성

농업인 소득 파악의 필요성은 크게 정책대상 선정과 급여 산정의 정확성, 조세·사회보험 제도의 형평성, 농업경영 개선과 위험관리의 기반 구축이라는 세 측면에서 제기된다. 임소영 외(2022)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원정책이 소득 기반으로 설계되는 과정에서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가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으나, 농업분야는 소득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아 정책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즉 '소득자료 부재'는 단지 통계의 공백이 아니라, 정책 접근성의 격차(사각지대)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소득 파악은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과도 직접 연결된다. 농업인이 자신의 매출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작목 선택, 투자·차입, 비용 절감,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영장부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장부 기반 경영진단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임소영 외, 2022).

한편, 농업인의 소득 파악은 농업정책 영역을 넘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확대, 농업인 대상 부모·돌봄 관련 급여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급여의 적정성을 설계하려면 최소한의 소득·매출 기준선과 검증 가능한 자료원이 필요하며, 현재의 비과세 구조와 자료 분절성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의 육아(휴직)급여의 도입은 농업인의 소득자료 확보가 필요함을 더욱 강조한다. 특히, 농업은 점업 여부, 작목과 규모, 거래형태, 비용의 계절성·변동성이 커서 단순한 매출액만으로 실제 소득을 대리하기 어렵다. 정확하고 비교가능한 농업인 개인 소득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확한 정책대상 규모 추계가 어렵고, 급여 산정의 형평성과 수용성이 약화되며, 부정수급이나 수급 누락의 위험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3) 농업분야 소득정보

#### 가) 국세청 소득신고

국세청 기반 소득정보는 '신고'와 '과세자료'라는 장점이 있으나, 농업의 비과세·면세 구조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임소영 외(2022)는 국세통계연보(농림어업 사업자 신고 내역)를 활용하여 농림어업 사업자의 소득신고 건수가 2016년에 26,200건에서 2020년 30,500건으로 증가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고가 증가하는 동시에 소액 신고 비중이 커지는 추세도 함께 나타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농업인의 소득 분포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행 제도에서 국세청의 소득신고 체계에서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농업 외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한 경우,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에 수반되는 사업장현황신고,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의 종합소득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범위가 넓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실제로는 '자발적 신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 국세청 자료에서 포괄할 수 있는 농업인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 나) 농업분야 소득정보 수집 자료

농업분야의 소득·매출 관련 정보는 국세청 자료 외에도 여러 행정·통계 시스템에 분산되어 존재한다. 다만 각 자료는 수집 목적이 서로 달라 농업인 소득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 또한 각 자료만으로는 온전한 농업인 소득 파악이 어려우며, 개인 농업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소득수준별 지원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정책 설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대표 자료원으로 농업경영체등록, 농축산물소득조사, 농업ON 경영장부, 공익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 (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등록(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은 농업인의 경영체 정보와 농업법인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 농

업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등록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문한필 외, 202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 대상 각종 지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신규 등록의 대상은 농어업, 농어촌 관련 용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로 개인(농업인)과 법인(농업법인)을 포함한다. 이때 농업법인은 관련 법 조항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 등록정보의 범위는 크게 인적정보, 농지·사육시설 규모, 생산 품목,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으로 제시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를 전제로 하며,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농업법인은 법인의 인적 구성 및 관련 정보, 출자 규모, 근로인원, 생산 규모, 생산량 및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별 점유율 등을 등록한다.

등록요건은 영농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재배·사육 규모 기준이 다르다. 구비서류 또한 영농 유형별로 요구하는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상이하다. 다만, 영농 유형의 공통적인 구비서류는 영농사실확인서와 농산물 판매영수증이며, 농산물 판매영수증의 기준은 연간 120만원 이상이다. 다음 <표 III-3-6>은 영농유형에 따른 등록요건과 증빙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I-3-6>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구분	등록요건	구비서류
농작물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li> <li>- 660㎡ 이상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li> <li>- 330㎡ 이상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설치 후 재배(임업용 종자·묘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 이상 경작 시)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li> <li>- (1,000㎡ 미만 경작 시)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등</li> <li>* 농지대장은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li> </ul>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_농업경영체등록.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bbsSn=0&cssStvl=&gnrlzGroupLevelStvl=03051010000000&hghrkMenuId=MN10003&menuId=MN40248&menuNm=%EB%86%8D%EC%97%85%EA%B2%BD%EC%98%81%EC%B2%B4+%EB%93%B1%EB%A1%9D&menuTypeStvl=CON&tmptNm=defaultContents&upMenuId=MN20368&upMenuTypeCd=DIR> (2026. 2. 2 인출).

구분	등록요건	구비서류
콩나물 재배	-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재배사 면적 50㎡ 이상)	-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수직농장	-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바닥 재배면적 165㎡ 이상)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가축 사육(축산업)	- 330㎡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 설치 후, 관련 별표 기준 이상 가축규모 사육 - 330㎡ 이상 농지에 가축사육시설 면적(별표 기준) + 가축(별표 기준) 사육 - 또는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확인서,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수탁계약서 등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사육·생산 신고 확인증을 받고, 별표 기준 이상 사육규모로 대상곤충 사육	-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양봉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 사육	- 양봉농가 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영농사실확인서(이동 사육 시 이동 양봉계획서 또는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추가),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제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Stvl=CON&upMenuId=MN20368&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51010000000&bbsSn=0&menuNm=%EB%86%8D%EC%97%85%EA%B2%BD%EC%98%81%EC%B2%B4+%EB%93%B1%EB%A1%9D&upMenuTypeCd=DIR&tMptNm=defaultContents&cssStvl=sub01\\_0601](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Stvl=CON&upMenuId=MN20368&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51010000000&bbsSn=0&menuNm=%EB%86%8D%EC%97%85%EA%B2%BD%EC%98%81%EC%B2%B4+%EB%93%B1%EB%A1%9D&upMenuTypeCd=DIR&tMptNm=defaultContents&cssStvl=sub01_0601) (2026. 2. 2 인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자격을 검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관련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공익직불금제’이

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을 농업인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역시 시행지침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수적인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어업인을 발굴하고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핵심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2017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농식품부가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를 비롯하여 경영주 외의 가족,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1인 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유형 중에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로 1인 사업자의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양육수당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농업경영체 증명서나 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인 자격확인을 위해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 신청 시 돌봄특례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자격확인을 위해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매출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I-3-7〉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증명서) 활용 제도

구분	소관부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활용 방식
공약직불금제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및 요건</li> <li>•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 신청 명시</li> </ul>

구분	소관부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활용 방식
친환경농업직접지원제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자격 및 요건</li> <li>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li> </ul>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자격 및 요건</li> <li>'17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경영주 등록자</li> </ul>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li> <li>51~80세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li> </ul>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의 소득활동 심사자료</li> <li>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li> </ul>
농어촌양육수당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자격(농업인) 확인 서류</li> <li>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li> </ul>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특례 맞벌이 가정 부모 취업확인 서류 대체</li> <li>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제출</li> </ul>

-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3. 6).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2) 김천시. 2026년 친환경농업 직접지원제 사업시행 알림. <https://www.gc.go.kr/district/eomo/bbs/view.do?bidx=4521024&ptidx=1807&mlid=0601000000&searchCategory=eomo> (2026. 3. 30 인출).  
 3)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2025. 12).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1. 30).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확대  
 5) 고용24 홈페이지 <https://ei.work24.go.kr/ei/eim/eg/ei/eiminsr/retrievePb0304Info.do> (2026. 3. 5 인출).  
 6) 정부24.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410000055&tp\\_seq=](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410000055&tp_seq=) (2026. 4. 1 인출).  
 7) 보건복지부(2026). 2026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여러 지원 제도에서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나 소득활동 증빙에 활용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바로 '정확한 소득자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소영 외(2022)는 과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출·판매 관련 정보 등록 규정이 완화되고, 농업소득·자산·부채 항목이 삭제·축소되는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업인 자격요건 및 소득 파악에서 핵심적인 증빙자료이나, 소득액을 정밀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2) 공익직불금 제도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기능에는 먹거리 안전(안정적 공급), 환경·



생태 보전(국토환경·자연경관·수자원·생태계 등), 농촌 공동체 유지(전통·문화 보전) 등이 포함된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되며, 기본형은 소규모 농가(경작면적 0.5ha 이하)에 정액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면적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전제로 하며, 기존 직불 수령 이력 또는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이력 등과 결합하여 판단한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

소농직불 요건에는 농지면적(0.1~0.5ha), 거주·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등이 포함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제한된다.

특히 영농일지 작성을 필수 준수사항으로 강조하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재배기간 동안 영농활동을 기록하고, 영농일지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고 영농일지 작성·보관 시 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면 영농활동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등 엄격한 처분을 한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인 소득파악 자료로 부분적 활용이 가능하나, 활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농업 외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인지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영농일지 및 영수증 보관 등을 활용하여 영농활동 증빙 자료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공익직불금 자료만으로는 개별 농업인의 농업소득이나 가구소득을 직접 산출하거나 소득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익직불금은 신청 기반 제도이므로 관련 행정자료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직불금 신청을 한 농업인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전체 농업인을 포괄하는 소득파악 자료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 (3) 농산물소득조사

농산물소득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통계로, 작목별로 생산량, 농가수취가격, 농자재·노동 투입량 및 비용을 조사하여 총수입·경영비·소득 등 경영성과 지표를 산출·공표한다. 2024년 기준 조사 규모는 114작목 5,300농가이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5. 9. 30). 농산물소득조사의 조사모집단과 표본추출틀로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표본조사이다. 목표모집단은 조사대상 작물 재배농가 중 노지 660㎡ 이상, 시설 330㎡ 이상(동·읍·면 지역) 등으로 정의되어, 조사결과는 '전국 기준' 작목 재배농가를 대표하도록 설계되었다. 공표 형태는 기본적으로 작목별 총수입·경영비·생산비·소득 등의 평균값이며, 소득 추정치를 제시한다. 표본조사 추정치여서 모집단 값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세부 범주별로 추정치의 대표성이 제한될 수 있다(농촌진흥청, 2024).

따라서 농산물소득조사는 농업인의 소득파악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선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이 조사는 작목별로 총수입과 비용(경영비/생산비)을 체계적으로 산출하므로, 정책적으로는 품목별 경영성과 비교, 비용 구조 진단, 가격·비용 충격에 따른 소득 변동 위험 평가 등 작목 단위별로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농산물소득조사 자료를 개별 농업인의 행정적 소득 증빙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농산물소득조사가 표본조사이며 평균값 공표 중심이라는 점과 소득 추정치의 오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4) 농업ON

농업ON(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은 2019년에 개설되어 농업경영장부 외에도 가격정보, 지원사업 정보, 기술 컨설팅 등 농업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농업ON의 농업경영장부는 품목별·거래처별·입출금 및 거래내역 조회, 자산·부채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의 종합적인 경영 상태 파악에 용이하였다(임소영 외, 2022).

다만, 2025년 농업ON 시스템이 개편되었다. 개편전에 농업ON 경영장부의 확산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2021년 말 기준 농업ON 경영장부 등록 인원이 1만 8,000명이었으며, 지속 이용 인원이 약 7,000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용 실적에 대한 공식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경영장부를 소득 파악의 핵심 수단으

로 삼기 위해서는 입력 부담을 줄이는 자동화, 교육·컨설팅과 결합한 유인체계, 정책사업과의 연계 등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임소영 외, 2022).

### 3) 사회보험 체계 내 소득 파악

#### 가) 국민연금<sup>15)</sup>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국세청에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설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하한과 상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지역가입자는 납부 시점에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2025년 7월 이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적용범위는 최저 40만원~최고 637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권장소득월액이 있다.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산정한 값이며, 산정의 기초로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농지면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은 가입자 본인의 신고를 기본 구조로 하되, 공단이 보유·연계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참고 값을 제시하고 있다.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신고 시 참고용으로 제공되나, 신고 지연 또는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히 괴리되는 경우 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체계에서 사실상 중요한 보완장치로 기능한다.

소득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은 연 1회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체계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는 농업인 소득파악의 개별 증빙보다는 집단 수준의 소득수준 분포를 가늠하는 통계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는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규모를 제시하는 형태로 제공되어, 특정 시점에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지역가

15) 국민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O021M0.do> (2026. 2. 4 인출)을 중심으로 정리함.

입자 농업인 집단의 소득수준을 '보험료 부과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추정하거나, 정책대상 규모를 구간별로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과세소득이나 농업순소득 분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분포라는 점에서 개별 농업인의 '정확한' 소득을 대리하기 어렵다. 특히 농업은 계절성·변동성이 큰 소득 구조를 갖기 때문에, 신고 및 변경신청이 실제 소득변동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과약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신고권장소득월액은 개별 농업인의 직접적인 소득과약이나 소득 증빙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과세자료나 농지면적 등을 활용한 신고권장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 분포 통계는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보조적으로 추정하거나 농업인 소득과약 체계 설계 시 행정자료와 결합하여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국민건강보험<sup>16)17)</sup>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월 보수(급여)에 연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파악되는 소득·재산 등의 부과 자료를 결합해 산정된다. 이때 '소득과약'은 단일 행정자료로 개인의 실제 소득을 확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법령이 정한 범위의 소득자료를 취합·반영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및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도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통상 '보험료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점수의 합)'에 '점수당 금액(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다.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는 매년 1~10월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하되(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11월부터

16) 국가법령정보센터\_국민건강보험 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2026. 2. 4 인출).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ciNo=1&cnpClsNo=1&search\\_put=](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ciNo=1&cnpClsNo=1&search_put=) (2026. 2. 4 인출).

는 보다 최근의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시차는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현재 시점의 실시간 소득'과는 일정한 거리(시차)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파악의 자료원 측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여러 행정기관 자료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은 소득세 신고·과세를 통해 축적되는 국세청 자료, 재산세 과세표준 등 지방세 기반의 재산 자료, 필요 시 자동차 관련 자료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설계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건강보험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는 보험료 산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표준화·가공된 지표로서 세법상 과세소득이나 순소득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는다. 또한 부과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이며, 세대 내 소득·재산의 결합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개별 개인(개별 농업인)의 소득을 역추정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따른다.

다만, 국민연금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 기반의 소득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업인 소득파악에서도 일정 부분 활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유형을 정교하게 규정하고 비과세를 제외하는 방식, 부과체계 개편 방식 등은 소득기반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 다)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실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자영업자는 매출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통상적인 소득파악에 따른 보험료 산정 모델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급여 산정이 이루어진다.

제도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기준보수(보수액)'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기준보수)을 고시로 정한다. 1~7등급의 기준

보수와 월보험료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대신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진다. 1등급의 기준보수는 182만원, 월보험료는 40,950원이며, 7등급의 기준보수는 338만원, 월보험료는 76,050원이다.

〈표 III-3-8〉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 보험료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자료: 고용24 홈페이지.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06&systCId=SC00000346> (2026. 2. 3 인출)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규칙하고 거래·비용 구조가 다양하므로 과세자료만으로 현재 월별 소득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이에 기준보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증빙 제출 부담 등 가입자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제고하며 제도 운영의 단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도 이용자의 '실제 소득'과 보험료·급여가 1:1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소득파악의 한계를 내포한다. 즉, 기준보수는 선택된 보수이므로, 개별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 및 검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지금까지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2024년 말 기준 가입률이 0.8%에 불과하다(박충렬, 2025). 가입률이 낮으면 위험분산 자체가 제한되고 기본적인 사회보험으로서 기능이 약화된다.

소득 기반의 제도가 형평성이나 사회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나, 소득의 변동성이 크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어렵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농업인 집단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적용 확대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부정수급 문제, 급여-기여 연계의 정합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한계로 농업인 소득파악에서 고용보험 제도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소득자료가 불완전한 집단인 농업인의 경우는 선택된 등급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설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에 농업인을 어떻게 포함해나갈 것인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도 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내에 육아(휴직)급여가 도입되면, 농업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농업인의 소득파악과 지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

## 농업인 육아휴직급여 제도 설계 및 소요예산 추계

---

01 농업인 대상 육아급여 설계 쟁점

02 농업인 육아수당(급여) 정책

시나리오

03 소요예산 추계



## IV. 농업인 육아휴직급여 제도 설계 및 소요예산 추계

### 1. 농업인 대상 육아급여 설계 쟁점

#### 가. 급여 성격 및 지급방식

##### 1) 현금급여의 구분 기준

사회급여 또는 현금급여는 어떠한 원리와 정책적 목표를 바탕으로 설계되는지에 따라 급여 성격이 달라진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도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설계인지, 기여 방식의 사회보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설계인지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히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다(박은정 외, 2022).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을 농업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제도 개편을 할 경우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설정과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결정은 상당히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인 현금급여의 구분 기준에 따른 쟁점을 이해하여야 농업인 대상 급여 설계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현금급여는 누구를 급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가라는 지급기준의 차원과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지급하는가라는 지급방식의 차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윤홍식 외, 2019; 이상은, 2021; 박은정 외, 2024).

〈표 IV-1-1〉 현금급여 구분 기준

구분	내용
급여지급 기준에 따른 구분	모든 사회구성원
	인구학적 기준
	기여 기반
	자산조사 기반
급여지급 방식에 따른 구분	정액급여
	소득비례급여

구분	내용
	아동 및 가구특성별 차등 급여 (자녀수, 출생순위, 연령, 장애 등)

자료: 윤희식 외(2019); 이상은(2021); 박은정 외(2024). p.22에서 재인용하여 일부 수정함.

먼저, 지급대상 기준에 따른 구분은 급여의 적용 범위와 수급 자격의 원리를 보여준다. 가장 포괄적인 형태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이다. 이는 시민권 또는 거주권에 기초하여 일정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특정한 결핍이나 위험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라기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장되는 기본적 사회권의 일부로 이해한다. 이러한 급여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낙인효과를 줄이고 행정적 선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광범위한 대상 포괄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고, 한정된 재정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재분배의 집중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된다(Anttonen, A., & Sipilä, 2014; 윤희식 외, 2019).

이에 비해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급여는 연령, 성별 등 특정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는 생애주기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노인 대상 기초연금 등은 특정 인구학적 집단이 가지는 구조적 필요 또는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유형의 급여는 수직적 재분배뿐 아니라, 동일한 소득수준 내에서도 특정한 돌봄 부담이나 생활비용 차이를 보정하는 수평적 재분배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윤희식 외, 2019; 박은정 외, 2024).

기여 기반 급여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입각한 급여형태이다. 급여 수급권이 이전의 보험료 납부나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 이력과 연결되며, 급여는 개인이 사회보험 체계에 기여한 정도를 토대로 정당화된다. 이 방식은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나, 특정 사회보험 제도 내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집단은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윤희식 외, 2019).

반면 자산조사 기반 급여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기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며, 급여의 표적화(targeting)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급여 수급 자격을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부과하거나 신청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이상은, 2021; 임완섭 외, 2022; 박은정 외, 2024).

다음으로 급여지급 방식에 따른 구분은 현금급여가 어떤 산정 원리와 배분 철학을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정액급여는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급여 구조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행정적으로도 가장 명확한 형태이다. 정액급여는 주로 기본적 소득보장이나 특정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되며, 급여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다만 수급자의 기존 소득 수준이나 필요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수준 유지 기능보다는 최소한의 비용 보전 또는 상징적 지원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이상은, 2021; 박은정 외, 2024).

둘째, 소득비례급여는 개인의 이전 소득 또는 보험료 납부 수준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앞서 제시한 기여 기반 급여는 주로 소득비례급여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득비례급여는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주로 사회적 위험 발생 이전의 생활기반을 일정 정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최저수준보장보다는 소득대체의 기능이 강하며, 사회보험 급여에서 핵심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고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재분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상·하한선을 두거나 정액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도 활용된다(윤홍식 외, 2019; 박은정 외, 2024).

셋째, 아동 및 가구특성별 차등급여는 자녀 수, 출생순위, 연령, 장애 여부, 가족구성, 돌봄 필요도 등 수급자의 생활 조건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족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급여는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 아동의 발달단계별 필요 반영,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등 복합적 목적을 가진다(박은정 외, 2024).

## 2) 농업인 육아급여의 성격과 지급방식 관련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급여의 성격과 지급방식은 정책적 결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을 확대한 급여의 성격과 지급방식 역시 단일한 형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는가

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이면서 동시에 생산과 생활이 결합된 가족경영의 특성을 지닌 농업인을 포괄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임금근로자를 전제로 발전해 온 기존 육아휴직급여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휴직이 가능한 임금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급여라는 용어 대신, 육아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농업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법적 의미의 ‘휴직’을 설정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사업이나 영농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를 제도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사용자와 종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특히 농업인은 생산과 생활이 결합된 가족경영의 특성 속에서 일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박미선, 2023). 이러한 조건에서는 임금근로자처럼 휴직이라는 법적 상태를 전제로 급여를 설계하기보다,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감소와 돌봄 부담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전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기존 육아휴직급여의 개념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농업인의 현실에 맞게 급여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도한 것이다.

먼저, 농업인을 포괄하는 육아급여가 보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중단에 따른 임금상실 보전과 노동시장 복귀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강민정 외, 2019).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육아기로 인한 부담은 단지 소득의 일시적 감소에만 있지 않다. 심층면담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농번기·농한기의 계절성, 가족노동 의존, 영농과 생활공간의 중첩,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돌봄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이 동시에 작동한다. 농업인은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의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기간이라도 영농을 온전히 맡길 대체인력 구인이 어렵고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대상 육아급여는 단순한 소득대체 급여를 넘어, ‘돌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의 확보’, ‘영농의 지속 가능성 유지’, ‘가족 내 돌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을 포괄하는 육아급여의 급여 성격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부모됨 자체와 영유아 돌봄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보편적 성격의 급여이다. 이

는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집단을 대상으로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은 연중 변동성이 크고 공식 소득신고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 산정의 기초를 정교하게 마련하기에 까다롭다. 기존 농업분야 소득파악 연구에 따르면, 농업인 매출 관련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나 비용 자료와 장부기장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소득신고 유인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임소영, 2022). 이런 조건에서는 정액급여가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제도 도입 초기의 접근 방식으로 유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생활수준 유지나 휴업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기능은 제한적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휴직·휴업에 대한 급여보다는 육아기에 단기적인 소득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 또는 소득활동 이력과 연계된 소득비례형 급여이다. 이는 자영업자도 일정한 기여 또는 소득 확인을 전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소득대체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설계는 권리성과 제도적 정당성이 높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신고소득과 실제 가처분소득이 일치하지 않거나, 영농수입이 재투자와 결합되어 개인소득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급여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익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자신의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1인 경영 농가는 제도상 불리해질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Eriksson & Hajdu, 2021). 결국 농업인에 대한 소득비례급여는 이상적으로는 생활수준 유지 기능이 가장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파악 기반 구축과 신고체계 정비 없이는 적용이 어렵다.

셋째, 기여 기반 급여와 소득비례급여 사이에 중간적인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가입자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연계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수급권의 발생 원리라는 점에서는 사회보험에 기초한 기여 기반 급여에 해당하지만, 급여액의 산정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실제 소득비례급여라기보다 ‘등급형 소득연계 급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 변동성이 크고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자영업자(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절충적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농업인을 포괄하는 육아급여는 소득비례급여 방식보다 일정한 기준보수 구간을 설정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 나. 수급 자격요건

### 1) 농업인 증빙 기준

농업인 육아급여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재 농업인은 임금근로자처럼 고용계약이나 임금지급 내역 등으로 자격과 소득활동 상태를 일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농업은 가족경영과 자영적 운영의 성격이 강하고, 경영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종사자, 일부 고용종사자까지 함께 영농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는 농업인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활용 가능한 제도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제도와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있다.

현재 '농업인 확인서'는 육아급여의 농업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적인 확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근거하여 농업인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22-57호(2022. 7. 27., 일부개정)). 상위 법령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는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26. 1. 20., 일부개정)). 따라서 농업인 육아급여 제도에서 농업인 확인서의 활용은 별도의 새로운 판정 체계를 만드는 대신 현행 농업인 확인 체계를 수급자격 판단에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의 연계성 및 행정적인 편의성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인 여부를 공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담당하며, 신청인은 농지, 판매, 영농 종사 사실, 사육 규

모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본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이 규정은 농업인을 단순히 경영주 명의자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영농 참여와 종사 사실을 기준으로 폭넓게 포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이는 육아급여와 같이 실제 돌봄과 소득활동 조정의 부담을 지는 사람을 제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명의상 경영주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면, 급여 대상 설정의 형평성과 포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V-1-2〉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_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ld=1&subMenuld=15&tabMenuld=81&eventGubun=060101&query=%EB%86%8D%EC%97%85%C2%B7%EB%86%8D%EC%B4%8C+%EB%B0%8F+%EC%8B%9D%ED%92%88%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2026. 3. 5. 인출).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등록제도이다.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가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규모, 용자·보조금 수령정보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10. 1., 타법개정).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의 본래 목적은 특정 개인의 농업인 자격 자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기보다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공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를 각종 영농 지원과 연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제도적 성격이 다르다.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 또는 농업 종사 사실을 입

증하는 행정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현장에서는 접근성, 확인 가능성, 자료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농업 관련 자격·종사 여부의 확인자료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증빙으로도 활용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sup>18)</sup> 이는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법적으로는 별개의 제도이더라도, 실제 사회급여 집행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 관련 자격과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행정적 증빙자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바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증빙 자료 발급 편의성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집단은 배우자와 가족종사자이다. 경영주 명의가 특정 1인으로 있더라도, 실제 영농은 부부 또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육아급여 제도에서 농업인을 경영주 중심으로만 인정할 경우, 농촌의 실제 돌봄 부담과 노동 부담을 크게 지는 배우자나 가족종사자가 제도 밖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고, 이 중 배우자는 일정 요건 아래 공동경영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서 작성 시 공동경영주 표시는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여 경영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배우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3호가목<sup>19)</sup>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18) 고용 24 홈페이지 <https://ei.work24.go.kr/ei/eim/eg/ei/eiEminsrr/retrievePb0304Info.do> (2026. 3. 5 인출)

19)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배우자의 농업인 확인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배우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될 수 있다. 둘째, 배우자가 실제 영농 종사 사실을 바탕으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확인될 수 있다. 셋째, 이 가운데 배우자는 경영주의 동의를 있을 경우 공동경영주로도 표시될 수 있다. 농업인 육아급여 제도 설계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육아로 인해 영농활동을 축소하거나 돌봄 부담을 직접 떠안는 사람이 실제로는 여성 배우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3호에 따라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이 일정한 영농사실 확인을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가족종사자는 단순한 동거 가족이 아니라 실제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도상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 소유나 판매 명의는 특정인에게 집중되더라도, 노동 제공과 돌봄 부담은 가족 내에서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업인 확인서의 수급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면, 육아급여의 대상을 법적 농업경영체 명의자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 영농 참여자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한편,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확인 경로가 제시되어 있다.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는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이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인 확인 체계가 가족종사자뿐 아니라 일정한 고용관계에 있는 농업종사자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 육아급여의 수급자격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행정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빙자료이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농업인 기준과 연계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결합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 또는 농업 종사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역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와 가족종사자를 포괄해야 하는 농업인 육아급여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일 증빙체계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 설

계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요시 매출자료나 영농사실 자료(영농사실확인서 등)를 활용하는 복수의 증빙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휴직·휴업 및 소득 감소·중단 기준

자영업자(농업인) 대상 육아급여에서는 지급방식 못지않게 ‘무엇을 휴직·휴업으로 볼 것인가’라는 인정 기준도 핵심 쟁점이 된다. 임금근로자에게서 휴직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속에서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지만, 농업인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또한 영농의 특성상 완전한 휴경(영농중단)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영농 중단을 전제로 할 경우 실제 농업 현실에서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업인의 육아급여는 완전한 휴경(영농중단)을 수급요건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가족 외 대체인력 활용,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영농시간 감소 등 보다 유연하게 영농 운영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 형태의 육아수당이 도입될 경우, 휴경이나 소득의 현저한 감소를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제도의 성격과도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육아수당은 본질적으로 임금대체나 정밀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육아기 농업인의 돌봄 부담과 영농 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완전한 영농중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기보다는, 자녀 양육을 위해 영농시간을 줄이거나 작업 방식을 조정하였는지, 가족 외 대체인력을 활용하였는지, 또는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영농 참여 수준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즉, 저수준 정액급여에서는 ‘완전한 휴업’보다는 ‘육아로 인한 영농 운영의 조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농업인의 영농 조정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활용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익직불금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자격 검증과 신청이 이루어지고, 재배면적·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가 요구되므로, 육아급여 수급을 위해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직불금 신청 및 지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 육아급여에서는 농

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본적인 농업인 자격 확인자료로 활용하되, 영농 조정 사실 자체는 대체인력 고용자료, 작업위탁 영수증, 영농일지 등 작업·경영기록, 출하정산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의 계속적인 영농 종사 여부를 보완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

한편, 농업인 확인서를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만하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는 행정문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의 자격과 영농 관련 사항을 입증하는 1차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농업인 확인서에 신청인(본인)이 출산·육아로 인해 영농 참여를 중단한 일수나 영농 참여 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육아로 인한 영농 운영 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농 운영 조정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는 대체인력 고용자료, 인건비 지급자료, 작업위탁 영수증 등을 추가 자료로 함께 활용 가능하다.

#### 다. 소득 파악 및 소득 기준

농업인 육아급여 제도를 설계할 때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수급대상 농업인의 소득활동 여부와 소득 파악 가능성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비교적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 소득활동과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지만, 농업인은 자영적 경영, 가족노동, 면세거래, 계절적 판매, 위탁출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농업인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이며 농업의 특성상 임금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을 파악할 경우 제도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농업인 육아급여에서 소득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농업인의 소득 신고 체계와 소득 파악 방식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 형태로 육아수당을 도입되는 경우와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소득수준을 반영한 육아급여가 도입되는 경우에 따라 농업인 소득 파악이나 소득 기준 활용 자료의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전제를 구분하여 소득 파악 및 소득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 형태로 육아수당 도입 시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급자격의 엄격성도 달라진다. 육아기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로 육아수당이 설계된다면, 행정적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기본 자격 증빙으로 삼아 수급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이 제도 목적과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별도의 소득증빙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활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단순한 자기신고 자료가 아니라, 현행 법령상 일정한 농업 종사성과 실제 영농을 전제로 한 행정자료라는 점이다. 농업인 기준은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1천㎡ 이상 농지의 경영·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두 자료는 정확한 소득액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의 기본적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농업소득 발생을 증명하는 성격의 행정자료가 자격 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농업은 가족경영, 면세거래, 계절적 소득발생, 위탁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처럼 표준화된 소득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정액급여까지 개별 농업인에게 소득자료를 일일이 요구한다면, 제도 운영비용과 신청인의 입증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즉,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에서는 정확한 소득액을 파악하는 것보다 농업인의 자격과 기본적인 농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자격요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공식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육아수당이 정밀한 소득대체급여가 아니라 저수준 정액급여라면,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본 자격요건 자료로 삼는 것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넷째, 이미 존재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대규모 소득심사 체계를 새로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2026. 3. 10 인출).

구축하지 않고도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수급 신청자도 새로운 세무자료를 일일이 준비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 인정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특히 배우자, 가족종사자 등 소득증빙 자료가 미흡하지만 실제 돌봄 부담이 큰 농업인 집단의 배제를 방지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섯째,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농업인 확인 신청서’에는 농업인 충족 기준, 농업 경영·경작 규모, 연간 농업 종사일수뿐 아니라 연간 농산물 판매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농업인 확인서가 신청 단계에서 이미 일정한 수준의 영농 실태와 소득 발생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물론 해당 신청서에 기재되는 판매액 정보만으로 정확한 연간소득이나 실제 순소득을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격심사에서 는 반드시 정밀한 소득 산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농 여부와 일정한 농업소득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면 정책 목적상 충분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 확인서가 면적, 종사일수, 판매액 등 복수의 요소를 종합하여 농업인을 판단하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액급여형 육아수당에서는 이를 기본 자격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부담을 피하면서도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로 농업인 육아수당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정밀 소득증빙 없이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는 새로 유입되는 농업인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세무자료나 거래증빙이 약한 농업인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설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육아수당 확대 또는 고용보험 체계 내 소득비례급여 도입 시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한 증빙 방식은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에 한정하여 적합한 방식이며, 현행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소득비례급여와는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소득비례급여 방식이 도입되거나, 육아수당의 지급액이 크게 상향되거나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한 지급기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농업인 대상으로도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현행 체계에서 농업인은 고용관계 여부, 세무신고 여부, 거래증빙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통해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에도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 다양한 양식의 서류가 제시되고 있고,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파악이 단일한 세무자료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행정자료와 거래자료 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박미선, 2023). 이러한 점에서 농업인 육아급여의 수급기준은 단순히 소득액으로 판정하는 방식보다는 농업인의 영농 및 소득활동과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증빙 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인 소득 파악 유형을 구분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농업의 경우 소득이 월별로 고르게 발생하지 않고, 면세 거래 비중이 높으며, 가족단위 영농이 일반적이어서 개인별로 소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업인 대상 육아급여 제도는 소득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표준적인 임금소득 확인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농업인의 소득신고 체계와 소득파악 현실을 반영한 유형별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소득 파악 유형을 크게 국세청 세무신고, 매출 증빙, 기타(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국세청 세무신고는 다시 경영주와 피고용인(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IV-1-3〉 농업인 소득(매출) 파악 가능 유형

구분		내용
국세청 세무신고자	경영주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농업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농업인
	피고용인(경영주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근로자(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피고용인 포함)
매출증빙 교부자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 계산서(면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과세·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과세·면세사업자) 발급자, 농협·공판장·위탁판매 정산자료 보유자, 계좌입금·거래명세표 보유자, 농산물 이력추적자료 보유자, 정부 구매 실적확인서 보유자

구분	내용
기타(가족종사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상 공동경영주* 증명 또는 가족원 농업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

주: 1)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여, 경영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경영주 표시가 가능  
2) 세무사 자문 후 작성 한 자료임.

자료: 저자 작성

첫째, 국세청 세무신고를 한 경우 중 피고용인 증빙 가능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용이한 유형이다. 여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 근로자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고용인이 포함된다.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에 대해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농업인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이력 등 일반적인 고용증빙 자료를 활용해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에 고용된 농업인은 임금 자료와 고용 이력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규모 개별농가의 고용인은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임금 입금내역, 고용사실확인서 등을 결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주(공동경영주) 농업인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농업인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농업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은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지출, 사업장 운영현황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사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sup>21)</sup> 특히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검

21) 국세청\_사업장현황신고,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2026. 3. 9 인출)

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부속자료 제출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sup>22)</sup>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농업인 규모 자체가 적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 중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례가 매우 소수라는 점에서 활용도는 상당히 낮을 수 있다.<sup>23)</sup>

셋째, 매출자료 증빙 가능 농업인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등 세무신고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거래자료를 통해 소득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자, 농협·공판장·산지유통조직 등을 통한 출하·위탁판매 정산자료 보유자, 계좌입금 내역이나 거래명세표를 제출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이 포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로 본인 명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농산물 판매영수증, 출하정산서, 위탁판매 실적자료, 거래확인서, 계좌 입금내역 등이 영농 및 매출 사실을 확인하는 유효한 자료로 활용된다.<sup>24)</sup> 이 유형은 특히 계절적 출하와 소규모 거래가 많은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도 설계상으로는 세무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기보다 거래자료를 통해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과 소득활동을 확인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무신고 및 거래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가족종사자 농업인은 제도 설계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종사자는 실제로 영농에 참여하고 돌봄 부담도 함께 지지만, 판매자 명이나 세무신고 명의 등이 경영주 명의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단위 소득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한 농업인 인정은 가능하나, 제도가 확대될 경우 소득 및 매출 증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경영주가 사업자 등록 농업인이면 가족종사자 근로소득 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증빙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경영주가 사업자미등록 농업인일 경우는 가족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한 인건비 이체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농업인 매출증빙 또는 소득증빙 자료를 농업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IV-1-4>와 같다.

22) 국세청\_사업장현황신고,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4&bbsId=131010> (2026. 3. 9 인출)

23) 세무사 서면자문(2026. 3. 17)에 근거한 진술임.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_농업경영체등록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2026. 3. 9 인출)

〈표 IV-1-4〉 농업인 매출 및 소득증빙 확인 자료

		매출증빙		소득증빙	
경영주 (공동 경영주)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온라인 매출내역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서 농업직불금 수령내역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계산서합계표	-		
	사업자 미등록자	출하명세서 출하대금이체확인서	-		
	경영주 외 농업인	-	-		

요컨대, 농업인 육아급여에서 소득 기준과 소득 파악 문제는 단순히 재정 산정의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누가 제도의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핵심 설계 요소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는 농업인의 소득 신고 체계와 소득 파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형별 구분에 따라 각각에 적합한 소득 파악 방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농업인의 다양한 경제활동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육아기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2. 농업인 육아수당(급여) 정책 시나리오

### 가. 정책 시나리오 핵심 요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핵심 요인은 크게 급여 지급 방식, 급여 수준, 지급 기간, 사용률, 고용보험 가입률, 적용 연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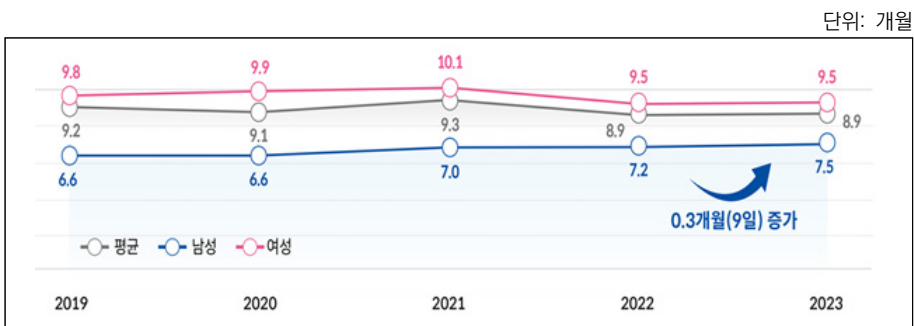
첫째, 급여 지급 방식은 정액급여형 육아수당과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로 구분하였다. 정액급여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고용보험 기반 급여는 소득수준 또는 고용보험료 수준을 반영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아직 정부의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제도 설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제도와 논의를 감안하여 정액급여형과 기존 고용보험 기

반 제도를 모두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급여 수준은 제도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정액급여형에서는 월 50만원과 70만원을 핵심 대안으로 설정하였다. 50만원은 현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준을 준용한 값이며, 70만원은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반면 고용보험 기반 급여에서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안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등급제)를 활용하여 소득대체율 6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밀한 실소득 비례 방식보다 기준보수 구간 선택형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셋째, 지급 기간은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정액급여형은 3개월과 6개월을 대안으로 둔다. 3개월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기간을 고려한 최소안이며, 6개월은 초기 영아기 돌봄 공백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확장안이다. 한편,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평균 8.9개월이며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7.5개월이다. 고용보험 기반 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 9개월 사용을 전제로 볼 수 있으며, 6개월과 12개월은 그 전후 범위를 포괄하는 축소, 확대 시나리오이다. 제도 설계 자체는 동일하게 12개월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2-1]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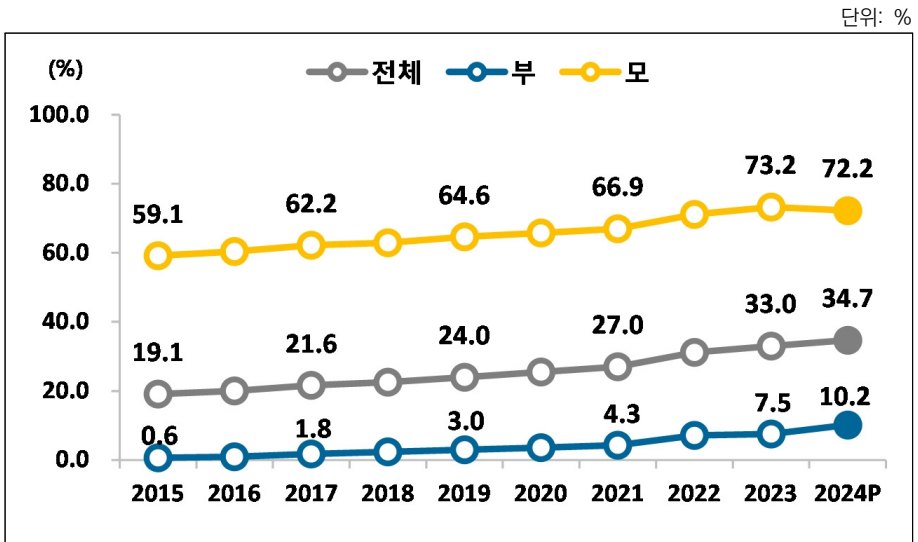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4);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2024). <https://argos.nanet.go.kr/lawstat/twdcvln/chart/graphic/detail?statMngKey=15810867&themaKey=15856659> (2026. 3. 12 인출)에서 재인용함.

넷째, 사용률은 급여 방식에 따라 다르게 가정된다. 정액급여형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 가능하므로 이용 문턱이 낮아, 50%, 75%, 100%의 단계적 사용률을 가정하였다. 고용보험 기반 급여는 현행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준값으로 두고, 현행 수준과 ±5% 범위를 검토해볼 수 있다.

다섯째,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기반 급여 시나리오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좌우하는 변수이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유지 자영업자는 53,705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박충렬, 2025: 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가 도입되었을 때 가입률이 다소 상향하는 것을 가정하여도 고용보험 가입률을 1%~5% 정도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처럼 5% 미만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형 제도가 제도 원리상 적합성이 높더라도 가입 촉진 장치 없이는 대상 포괄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IV-2-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주: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5. 12. 17).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1.

여섯째, 적용 연령은 0세와 0~8세로 구분하였다. 0세 모형은 출산 직후 및 영아기 초기의 집중 돌봄 수요와 소득손실 보전에 초점을 둔 최소 적용안이다. 반면 0~8세 확장형은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연령과 동일하게 가정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핵심 요인에 따른 구분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과 같다.

〈표 IV-2-1〉 농업인 육아수당(급여) 시나리오 핵심 요인에 따른 구분

지급방식	급여수준	지급기간	사용률	고용보험 가입률
정액급여 (육아수당)	50만원	3개월	50%	-
			75%	
	70만원	6개월	100%	
고용보험 기반 급여 (육아급여)	현행 육아휴직급여 수준	6개월	현행 사용률	1%
	기준보수(등급제)	9개월	현행 +5%	5%
	- 소득대체율 60%	12개월	현행 -5%	

주: 1) 현행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2) 현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1~6개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3) 기준보수: (1등급)1,820,000, (2등급)2,080,000, (3등급)2,340,000, (4등급)2,600,000,  
 (5등급)2,860,000, (6등급)3,120,000, (7등급)3,380,000  
 4) 현행 사용률: 2024년 기준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적용

자료: 저자 작성

## 나. 정책 시나리오 안

본 연구의 시나리오 구분의 두 축은 급여 방식과 적용 연령이다.

급여 방식 측면에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여형 육아수당과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소득보전 기능을 반영하는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를 구분하였다. 농업인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소득과약 체계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접근성과 포괄성을 우선하는 정액급여형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한 고용보험 기반 급여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용 연령 측면에서는 0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최소 적용안과 만 8세 이하 자녀까지 포괄하는 확장 적용안을 구분하였다. 0세 중심 시나리오는 출산 직후와 영아기 초기의 돌봄 부담 및 소득손실에 우선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도 도입 초기의 정책 집중 대상을 설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0~8세는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연령 적용 범위로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육아기까지 포괄한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I은 정액급여형 육아수당을 0세 자녀에 적용하는 모형, 시나리오 II는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를 0세 자녀에 우선 적용하는 모형, 시나리오 III은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를 만 8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는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IV-2-2〉 농업인 육아수당(급여) 시나리오 안

구분		적용 연령	
		0세	0~8세
급여 방식	정액급여 (육아수당)	시나리오 I	-
	고용보험 기반 급여 (육아급여)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 1) 시나리오 I : 정액급여형 육아수당(0세)

시나리오 I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육아수당 모델이다. 이 시나리오는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최소 적용안으로, 자영업자(농업인)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소득과약 체계 구축의 어려움 등을 전제로, 우선 제도 접근성을 확보하여 초기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급여 수준은 월 50만원 또는 70만원, 지급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적용연령은 원칙적으로 0세 자녀 중심으로 설정한다. 사용률은 50%, 75%, 100%의 범위로 가 정한다.

이 시나리오의 수급 자격요건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① 만 0세 자녀를 둔 자, ② 일정 기준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자, ③ 실제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기본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업인 확인 방식으로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농업인 확인서 보유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중 실제 영농 종사 사실이 확인되는 자'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특히 가족종사자 농업 인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주 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I에서 소득과약 및 소득기준은 엄격한 급여 산정 기준이라기보다 수 급자격의 최소한의 실제 확인 기능에 머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정액급여형은 소 득비례 급여가 아니므로 개별 농업인의 정확한 소득액을 산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 대신 농업인임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경제활동 확인을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이 이미 일정 한 농업 종사 기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농업인은 1천㎡ 이상의 농지 경영·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정액급여형에서는 별도의 소득 산정 없이, 현행 농업인 확인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이 기준을 활용하여 자격을 판단하고, 필요시 보완서류로 농업경영체 등록증명, 출하명세서, 직불금 수령내역,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 시나리오는 제도 도입 초기의 사각지대 완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 공동 경영 농업인, 사업자 미등록 농업인까지 일정 범위 포괄이 가능하다. 반면 급여수준이 정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손실 보전 기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농업인 FGI에서도 월 50만원, 3개월 수준은 실질적 육아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액급여형은 도입 초기의 최소 안전망으로는 적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높은 보장성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 2) 시나리오 II: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0세)

시나리오 II는 고용보험 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급여 모델이며, 적용 연령은 우선 0세 자녀 중심으로 설정한다. 급여 수준은 현행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준용하거나, 기준보수 등급제에 소득대체율 6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지급기간은 6개월, 9개월, 12개월의 범위를 두고, 사용률은 현행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준으로 ±5%를 가정한다. 고용보험가입률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감안하면 1%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입률이 증가할 경우 5% 정도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수급 자격요건은 정액급여형보다 엄격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① 만 0세 자녀를 둔 자,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고용보험 체계에 가입한 자, ③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④ 육아로 인한 소득중단·소득감소 또는 근로시간·영업시간 감소가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피보험 단위기간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영업자·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예컨대 ‘급여 신청 직전 일정 기간 이상 가입 유지’, ‘출산 또는 육아 개시

이전 일정 기간 이상 영농활동 지속’, ‘육아기간 중 농업활동의 실질적 축소 또는 대체인력 투입’ 등의 기준을 둘 수 있다.

시나리오 II에서 소득파악 및 소득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준용하는 실소득 연계형이고, 두 번째는 기준보수 등급제 활용형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실제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과세자료가 불완전하므로, 기준보수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더 실효성이 높다.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제소득이 아니라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며, 1등급 182만원부터 7등급 338만원까지의 보수구간이 설정되어 있다. 농업인(자영업자) 육아급여도 이와 같이 기준보수 구간을 선택하게 하고, 해당 기준보수의 60%를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실제소득 1:1 반영은 아니지만, 가입자의 행정 부담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이전 단계에서 농업인의 가입 자격 확인과 보험료 부담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유형별 증빙이 필요하다. 경영주·공동경영주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매출계산서합계표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 미등록자는 출하명세서, 출하대금 이체확인서, 온라인매출내역 등 매출증빙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경영주 외 농업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 II에서 기준보수(등급제) 적용안은 실소득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확인과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선택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가입 단계에서는 유형별 증빙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시나리오는 소득보전이라는 점에서 정액급여형보다 제도 원리가 분명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인의 사회보험 편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심층면담 결과에서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점이 파악되어, 제도 활용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홍보, 대체인력 지원 등과 결합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3) 시나리오 Ⅲ: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0~8세)

시나리오 Ⅲ는 시나리오 Ⅱ의 구조를 유지하되, 적용연령을 만 0세에 한정하지 않고 현행 육아휴직급여 적용 연령인 0~8세 자녀 육아기로 확대하는 모델이다. 이는 육아기 부모의 돌봄 공백이 출산 직후에만 집중되지 않고,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반영한 확장형이다. 급여 수준, 지급기간, 사용률, 가입률 변수는 시나리오 Ⅱ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되, 적용대상 규모와 재정 추계가 확대된다.

시나리오 Ⅲ의 수급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Ⅱ와 동일하되, 자녀 연령 요건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만 적용연령이 넓어지는 만큼, 실제 육아로 인한 농업활동 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장치는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생후 1년간은 모든 부모가 집중적으로 육아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로 영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유아기나 학령초기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어느 정도 영농을 조정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기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중단·감소 기준은 영농시간 축소, 대체인력 고용, 농업소득 감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돌봄으로 인한 노동시간 재배치 등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Ⅲ의 소득파악 및 소득기준 역시 시나리오 Ⅱ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준보수 등급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장부, 직불금 수령정보, 거래자료 축적 등을 활용한 소득파악 기반 고도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인 육아급여에서 소득 기준은 누가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시나리오 Ⅲ은 단순한 급여 확대안이라기보다 농업인 소득파악 체계와 사회보험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정비하는 방향과 결합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 4) 종합 논의

중장기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닌 단계적 발전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나리오 Ⅰ과 같은 정액급여형 육아수당을 통해 사각지대를

신속히 완화하고,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복잡한 소득심사 없이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후 중기적으로는 시나리오 II와 같이 고용보험 기반 급여를 도입하되, 기준보수 등급제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실제소득 파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형 급여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나리오 III처럼 적용연령을 확장하고, 농업인 소득과약 기반을 정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권리성 있는 육아급여 체계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정액급여형 육아수당과 고용보험 기반 육아급여 제도는 두 방식을 배타적인 선택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농업인)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소득과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급 자격요건에서는 농업인 확인 체계의 명확성,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포괄 여부, 실제 양육책임 확인 방식이 중요하며, 소득과약에서는 과세자료, 면세자료, 매출증빙 등 유형별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소요예산 추계

#### 가. 지급 대상 규모

농업인 대상 육아수당의 소요재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대상인 육아기 농업인의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III장에서 산출한 2022~2024년 육아기 농업인 규모 기준치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0세 자녀를 둔 육아기 농업인 수와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맞물려 있으며, 전체 출생아 수 또한 2023년에 전년 대비 7.7% 감소하여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전체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약 3.6%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인의 출생아 수는 감소 이후 뚜렷한 반등 없이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25년 전체 출생아 수는 2022년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의 출생아 수도 일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증가 폭이 전체 출생아 수의 회복 추세에 상응하는 수준인지, 나아가 향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 인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대상자 규모를 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의 출생아 수가 감소한 상태를 반영하는 2023~2024년 기준치 평균값과 최근 변동 추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2022~2024년 3개년 기준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0세 자녀를 둔 농업인의 규모는 2023~2024년 평균 기준 1,500명, 2022~2024년 3개년 평균 기준 1,870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IV-3-1〉 육아기 농업인 규모 기준치: 2022년~2024년

단위: 명, %

구분	2022		2023		2024		'23~'24 평균값	'22~'24 평균값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총계	1,761,132	100.0	1,695,640	100.0	1,623,273	100.0	1,659,457	1,693,348
8세 이하 유자녀 농업인	33,545	1.91	26,613	1.57	27,320	1.68	26,967	29,159
0세 유자녀 농업인	2,610	0.15	1,500	0.09	1,499	0.09	<b>1,500</b>	<b>1,870</b>

주: 1) 지역별고용조사, 농림어업조사별 육아기 농업인 비율과 농업인 총계를 동일한 가중치로 결합한 후 산출한 값  
2) 결합계수(가중치)  $w=0.5$  적용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2년~2024년 하반기 각년도 원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2년~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2022년~2024년 각년도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함.

〈표 IV-3-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21년~2025년

단위: 천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p
출생아 수	260.6	249.2	230.0	238.3	254.5
전년대비 증감률	-4.3	-4.4	-7.7	3.6	6.8
합계출산율	0.81	0.78	0.72	0.75	0.80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6. 2. 25)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p.3에서 일부 발췌함.

## 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소요예산 추계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으며, 도입 초기인 시점을 감안할 때 채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I안(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의 소요예산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산식은 지급대상 인원수 × 사용률 × 지급기간 × 월 지급액이며, 대상 인원수는 앞서 산정한 기준치에 따라 1,500명과 1,870명을 각각 적용하였다. 또한 월 지급액은 50만원과 70만원, 지급기간은 3개월과 6개월, 사용률은 100%, 75%, 50%의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다양한 조합별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 실제 지급률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소요 규모뿐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중간, 보수 시나리오의 소요예산까지 함께 검토하였다.

〈표 IV-3-3〉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소요예산 산출식

구분		육아수당 월 지급액	
사용률	지급기간	50만원	70만원
100%	3개월	대상 인원수 × 1 × 3개월 × 50만원	대상 인원수 × 1 × 3개월 × 70만원
	6개월	대상 인원수 × 1 × 6개월 × 50만원	대상 인원수 × 1 × 6개월 × 70만원
75%	3개월	대상 인원수 × 0.75 × 3개월 × 50만원	대상 인원수 × 0.75 × 3개월 × 70만원
	6개월	대상 인원수 × 0.75 × 6개월 × 50만원	대상 인원수 × 0.75 × 6개월 × 70만원
50%	3개월	대상 인원수 × 0.5 × 3개월 × 50만원	대상 인원수 × 0.5 × 3개월 × 70만원
	6개월	대상 인원수 × 0.5 × 6개월 × 50만원	대상 인원수 × 0.5 × 6개월 × 70만원

주: 대상 인원수 1,500명, 1,870명을 각각 적용

먼저, 지급 대상 인원수 1,500명을 적용한 경우, 월 50만원 지급 기준에서 사용률 100%일 때 소요예산은 3개월 지급 시 22억 5,000만원, 6개월 지급 시 45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같은 조건에서 월 지급액을 70만원으로 상향하면 3개월 지급 시 31억 5,000만원, 6개월 지급 시 63억원으로 증가한다. 사용률을 75%로 가정할 경우에는 월 50만원, 3개월 지급 시 약 16억 8,800만원, 6개월 지급 시 33억 7,500만원 수준이며, 월 70만원 기준으로는 각각 약 23억 6,200만원(3개월), 47억 2,500만원(6개월)으로 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용률을 50%로 가정하면 월 50만원 지급 시 3개월 11억 2,500만원, 6개월 22억 5,000만원, 월 70만원 지급 시 3개월 15억 7,500만원, 6개월 31억 5,000만원으로 나타난다. 즉, 1,5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요예산은 최소 약 11억 원 수준에서, 최대 63억 원 수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소요예산 산출: 1,500명 적용

단위: 천만원

구분		육아수당 월 지급액	
사용률	지급기간	50만원	70만원
100%	3개월	225.0	315.0
	6개월	450.0	630.0

구분		육아수당 월 지급액	
사용률	지급기간	50만원	70만원
75%	3개월	168.8	236.2
	6개월	337.5	472.5
50%	3개월	112.5	157.5
	6개월	225.0	315.0

다음으로 지급 대상 인원수 1,870명을 적용한 경우, 월 50만원 지급 기준에서 사용률 100%일 때 소요예산은 3개월 지급 시 28억 500만원, 6개월 지급 시 56억 1,0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월 지급액을 70만원으로 적용하면 3개월 지급 시 39억 2,700만원, 6개월 지급 시 78억 5,400만원으로 증가한다. 사용률 75%를 가정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3개월 지급 시 약 21억 400만원, 6개월 지급 시 42억 800만원 수준이며, 월 70만원 기준으로는 각각 약 29억 4,500만원, 58억 9,1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사용률 50%의 경우에는 월 50만원 지급 시 3개월 약 14억 300만원, 6개월 28억 500만원, 월 70만원 지급 시 3개월 약 19억 6,400만원, 6개월 39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규모를 1,870명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 범위가 최소 14억 원, 최대 78.5억 원 수준으로 추계되며, 1,500명을 가정한 경우에 비해 약 3억 원에서 15.5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IV-3-5〉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소요예산 산출: 1,870명 적용

단위: 천만원

구분		육아수당 월 지급액	
사용률	지급기간	50만원	70만원
100%	3개월	280.5	392.7
	6개월	561.0	785.4
75%	3개월	210.4	294.5
	6개월	420.8	589.1
50%	3개월	140.3	196.4
	6개월	280.5	392.7

# V

## 결론

01 농촌형 제도 설계(안) 종합

02 향후 추진 과제



## V. 결론

### 1. 농촌형 제도 설계(안) 종합

#### 가. 추진 방향

본 연구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체계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다수 농업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농업인의 노동과 소득 구조, 영농의 특수성, 농촌의 돌봄 인프라 부족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나 소득보전을 넘어, 농업인이 자녀돌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의 확보, 육아기에도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의 유지, 가족 내부에 집중되어 온 돌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함께 달성하는 방향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은 임금근로와 달리 일과 생활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계절성과 긴급성이 큰 노동이며, 일터와 돌봄공간이 공간적으로도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연구들에서도 농업이 여타 직종과는 달리 가족생활과 생산활동이 결합된 생활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가의 일·생활균형은 일반 고용관계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보여준다(Černič Istenič, 2025; Eriksson & Hajdu, 2021). 따라서 육아수당 또는 육아급여를 농업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완전한 휴경을 전제하기보다 육아를 위해 영농을 조정하고 돌봄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농촌형 시간지원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제도는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이 어려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업인과 영농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격요건은 유연하게 설계하되, 행정적 집행 가능성과 부정수급 방지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초기 단계에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형의 육아수당 방식인 경우는 자격요건을 유연하게 하여 사

각지대 해소와 제도 접근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보험 기반형의 급여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기여를 전제로 하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므로 보다 엄밀한 수급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농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완화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1〉 농업인 육아(휴직)급여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원칙

구분	내용
기본 방향 및 공통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요건을 유연하게 설계</li> <li>휴업·휴직 개념보다 '육아로 인한 영농조정'을 기준으로 설계</li> <li>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장치 마련</li> </ul>
정액급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요건을 비교적 유연하게 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접근성 확보에 중점</li> </ul>
고용보험 기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가입 및 기여를 전제로 보다 엄밀한 수급요건을 두되, 농업 특수성을 반영한 완화장치 병행 필요</li> </ul>

## 나. 수급요건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현행 임금근로자 중심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농업의 노동 및 경영 특수성과 제도 도입 단계별 성격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의 핵심 설계 요소로 지원 대상, 수급 자격요건, 급여 성격 및 지급방식, 지급 수준 및 기간, 소득 중단 및 감소 요건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급여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수급요건의 강도와 입증 수준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선 수급요건은 공통적으로 대상 자녀연령 요건, 농업인 자격 요건, 육아로 인한 농업활동 조정 요건의 세 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대상 자녀연령 요건은 제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 요건이다. 정액급여형 시나리오와 고용보험 기반 시나리오 모두 자녀 양육을 전제로 설계되지만, 시나리오 간 적용 연령에 차이가 있다. 특히, 자격요건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액급여형 육아수당 시나리오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0세로 한정하였으며, 고용보험 기반형의 경우 최소인 0세 모형과 현행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만 8세 이하 확장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농업인 자격 요건은 신청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요건이다. 이 경우 기본적인 자격 확인 자료로는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특히 농업인 대상 육아수당 또는 정액급여형 제도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활용하여 별도의 복잡한 소득심사 없이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격 확인 방식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설명 가능하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수급요건은 육아로 인한 농업활동 조정 요건이다. 임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고용관계 속에서 근로 제공을 중단하는 비교적 명확한 상태이지만, 농업인은 사용자이면서 노동자이고, 가족경영의 구성원이자 돌봄 제공자라는 복합적 지위를 가진다. 더구나 영농의 특성상 완전한 휴경이나 영농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인 수급요건으로 설정할 경우 실제 제도 이용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보면, 정액급여형과 고용보험 기반형은 수급요건을 달리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형은 제도의 목적이 임금대체에 준하는 정밀한 소득보전이라기보다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공백과 영농조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으므로, 수급요건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 양육 사실과 농업 종사 사실이 확인되고,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영농시간을 줄이거나 작업방식을 조정하였음이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완전한 휴경이나 소득의 현저한 감소를 엄격한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정액급여형의 제도 성격과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액급여형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한 농업인 자격 확인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두고, 대체인력 활용, 작업위탁, 영농시간 축소, 출하량 조정 등 육아로 인한 농업운영 조정 사실에 대한 간명한 확인을 중심으로 수급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고용보험 기반형 또는 소득비례형 급여는 급여 수준이 기준보수 또는 소득 수준과 연계되므로, 수급요건도 보다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농업인 자격과 육아 사실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또는 기준보수 선

택, 보험료 납부 이력,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농업활동 축소의 확인이 함께 요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나리오에서 기준보수 등급제를 활용한 고용보험 기반 급여를 검토하면서, 농업인의 실제소득 파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소득 비례 방식보다는 기준보수 구간 선택형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나리오 III에서는 적용 연령이 넓어지는 만큼 실제 육아로 인한 농업활동 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장치가 더 중요해지며, 영농시간 축소, 대체인력 고용, 농업소득 감소, 배우자 또는 조부모 돌봄으로 인한 노동 재배치 등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요컨대 정액급여형은 접근성과 사각지대 완화에 초점을 둔 완화된 수급요건, 고용보험 기반형은 권리성과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엄밀한 수급요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증빙기준 및 방법

### 1) 자격증빙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빙을 단일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복수의 공적·보완 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경영체 증명서)가 농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행정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이며, 특히 현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역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와 가족종사자를 포괄해야 하는 농업인 육아급여의 특성상 하나의 증빙 체계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필요 시 매출자료나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활용하는 복수의 증빙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격증빙은 1차적으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기본자료로 사용하고, 공동경영주·가족종사자·배우자 등은 영농사실확인서, 출하자료, 농지경작자료 등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체계가 적절하다. 이는 농업인의 공식 지위를 확인하는 행정적 안정성과 실제 영농을 하는 실질 양육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소득증빙

소득증빙 기준은 급여의 성격과 지급방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가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형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정밀한 소득액 산정보다는 신청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정한 농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의 증빙으로도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 경우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등록정보)는 단순한 자기신고 자료가 아니라, 현행 법령상 일정한 농업 종사성과 실제 영농을 전제로 발급·관리되는 행정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정확한 소득액 자체를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도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공식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형 제도에서 이를 기본 소득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반면, 향후 농업인 대상 급여가 고용보험 기반 기준보수(등급)형 또는 소득비례형 급여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소득증빙이 요구된다. 급여 수준이 실제 소득과 연동되거나 지급기간 및 급여액이 확대될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과 기본적인 소득 발생 여부만으로는 적절한 급여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 사업장현황신고 자료, 농산물 판매영수증, 출하정산서,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인 매출·소득 자료를 결합한 다층적 증빙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형에서는 농업소득 발생을 확인하는 기본 증빙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기반형 급여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추가 소득자료가 함께 요구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육아로 인한 영농운영 감소 증빙

영농운영 감소 또는 조정 증빙은 농업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영농중단을 입증하도록 하기보다는

자녀양육을 위해 영농시간을 줄였는지, 작업방식을 조정했는지, 가족 외 대체인력을 활용했는지, 영농 참여 수준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즉, '완전한 휴업·휴직'보다 '육아로 인한 영농 운영의 조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농업인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이다.

또한 영농조정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활용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익직불금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자격 검증과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육아급여 수급을 위해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직불금 신청과 지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기본적인 농업인 자격 확인자료로 활용하되, 영농 조정 사실 자체는 대체인력 고용자료, 작업위탁 영수증, 영농일지 등 작업·경영기록, 출하정산자료 등 관련 자료로 입증하도록 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지속적인 영농 여부를 보완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

이를 종합하면, 영농운영 감소 증빙은 대체인력 고용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자료, 작업위탁 계약서 및 영수증, 영농일지·경영기록장, 출하량 또는 작업량 변화 자료, 영농사실확인서 등 복수 자료를 인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는 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영농 구조를 조정하면서도 완전히 농업을 중단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표 V-1-2〉 농업인 증빙기준(안)

구분	자격증빙	소득증빙	영농감소 증빙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육아(휴직)급여 자격을 갖춘 농업인 인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소득 또는 농업기반 소득활동이 존재하는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로 인해 영농운영이 감소·조정되었는지 확인</li> </ul>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종사 사실과 농업인 자격 확인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밀한 소득액 산정보다 기본적 농업소득 발생 사실 확인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전한 휴경보다 영농 조정 사실을 유연하게 인정</li> </ul>
정액 급여형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li> <li>보완서류 필요시: 직불금 수령내역, 출하명세서, 출하대금 이체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인력 고용자료, 인건비 지급자료, 작업위탁 영수증 등</li> <li>보완서류 필요시: 농업인 확인서(영농참여 중단 일수 기재), 영농일지(경영일지), 출하명세서, 영농사실확인서 등</li> </ul>

구분	자격증빙	소득증빙	영농감소 증빙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자격 확인 + 고용보험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 산정과 연계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소득·매출 자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조정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li> </ul>
고용 보험 기반형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li> <li>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온라인 매출내역, 출하명세서, 출하대금 이체 확인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인력 고용계약서, 인건비 지급자료, 작업위탁 계약서 및 영수증, 영농일지, 경영기록장, 출하정산자료, 출하량·판매량 변화자료, 소득감소 입증자료 등</li> </ul>

## 라. 추가 규정

농업인 육아급여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엄격히 설정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로 만드는 것보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입요건은 유연하게 설계하되, 사후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관리 규정을 분명히 두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 허위 자료 제출 시 지급 제한 및 환수 규정을 둔다. 둘째,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후점검 또는 모니터링 체계를 둔다. 셋째, 동일 자녀의 육아휴직이나 동일 사유로 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 넷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와 신청 제한 규정을 둔다. 이와 관련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체계에서도 허위·과다청구에 따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시 장기간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또한 제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식품 마이데이터, 직불제 신청자료, 출하자료 등 기존 행정자료와의 연계성을 통해 사전검증과 사후점검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 2. 향후 추진 과제

### 가. 중앙정부 차원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검토

농업인 대상 출산·육아 지원체계를 논의할 때, 현금급여나 소득보전만으로는 농가가 실제로 직면하는 돌봄 부담과 영농 공백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농업은 계절성과 긴급성이 큰 노동이고, 가족경영과 자가노동 비중이 높아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노동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곧바로 영농 차질과 소득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기 농업인은 임금근로자처럼 대체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일 중단이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농업인 대상 육아지원은 소득보전 제도와 함께 영농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농촌지역은 돌봄자원 자체가 취약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과 육아로 필요한 대체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워 장기간 일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심층면담에서는 출산 전후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실제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300만원 안팎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진술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대체노동 비용 지원은 부수적 보완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출산 관련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 이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의 선택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나 농가도우미 사업이 중앙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현황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대체로 40~90일 수준이며, 지원단가와 자부담 비율 역시 지역별로 상이하다. 더구나 일부 시군만 사업을 실시하여 동일한 도 안에서도 사업 시행 여부가 갈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 중심 농가도우미 사업이 출산 직전·직후의 단기 공백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출산 이후 양육으로 인한 지속적 영농 공백에 대

응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다수 지자체는 출산 전후 각각 90일 이내 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원일수도 40~90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제도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육아기 영농공백 지원체계라기 보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단기 출산지원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재도입하거나, 국비를 지방비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실시한 경험이 있는 높은 수요의 제도를 중앙정부가 확대 및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질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공백은 별도의 지역사업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 역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협하는 중대한 생애위험이라는 점에서 사고·질병 중심 중앙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앙정부가 출산·육아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별도 지원 사업으로 재도입하고, 실제 양육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나 정액급여형 수당이 도입되더라도,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결합되지 않으면 농업인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는 단순한 보조사업 확대가 아니라, 농업인의 육아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나. 농업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검토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제소득이 아니라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소득 변동성이 크고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아, 별도의 가입 촉진 장치 없이 고용보험 기반 제도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인을 포괄하는 육아급여는 실소득 비례방식보다 기준보수 선택형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으나, 가입 유인과 유지 지원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대상 포괄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인하고 가입 이후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동일한 정책 논리에 기초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보험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농업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당수의 농업인은 현행 제도에 편입되기 어렵다. 농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출하정산 자료, 직불금 수령내역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비중 자체가 높지 않다.

따라서 향후 농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과 유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자격요건을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림어업인 경영주의 경우에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24. 7. 15). 농업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자 미등록 농업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출하명세서, 출하대금 이체확인서, 온라인 매출내역 등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매출 증빙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 농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제도와외의 중복성이 크지 않다. 현재 농업 분야의 보험료 지원은 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농업인안전보험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같이 폐업 또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영역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다. 따라서 농업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이라기보다 농업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농업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

험 유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향후 농업인 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당수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만으로는 농업인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소득증빙 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설계함으로써 농업인의 사회보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 다. 농업인 소득·매출 파악 체계 검토

농업인 육아급여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매출 파악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은 소득파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밀한 소득연계 급여 설계에 한계가 있다. 농업분야 소득파악 선행연구에서는 농업소득 미신고의 핵심 원인으로 소득신고 유인의 부족, 장부작성의 어려움, 세부담 우려를 지적하면서, 국세청 소득신고 원칙과 지원체계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의 보조적 활용, 전산정보의 적극적 활용, 장부작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한 바 있다(임소영 외, 2022).

이와 관련하여 출하정산자료,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입자료, 작업위탁 자료, 경영기록장 등 이미 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표준화하거나 전산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및 매출 기록과 신고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농식품부의 마이데이터, 세무자료, 직불제 자료를 연계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보다 정밀한 소득·매출 파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세금 신고된 소득 기준”을 소득활동 확인 기준으로 강화한 변화는 향후 농업인 대상 출산·육아 지원도 점차 세금신고 기반의 증빙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sup>25)</sup> 따라서 농업인 육아(휴직)급여의 제도화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농업인의 소득 및 매출 파악 체계 강화는 이전의 행정개선 과제에서 더 나아가, 향후 농업인의 사회보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정비 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1201768](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1201768) (2026. 3. 16 인출)





## 참고문헌

- 강민정, 김은지, 박수범, 권소영, 윤자영(2019).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2). 경북 여성농업인의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
- 경상북도 공고(제2024-1612호).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참여대상자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2025).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보도자료(2021. 11.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전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안착.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광주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2호.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소상공인 아이돌  
봄서비스』지원사업.
- 광주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3호.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1인 여성 자영업  
자 임신·출산』지원사업.
- 광주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40호.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시즌2 『소상공  
인 출생·임신 특별지원금』지원사업 모집 공고.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5. 12. 17).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 군산시 공고(제 2626-170호). 2026년「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  
여」지원사업 공고(안).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4. 7. 15).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  
로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 김은설, 유해미, 김재운, 박유경(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육  
아정책연구소.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원사항 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2024).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시행지침.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5). 2025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https://www.mafra.go.kr/woman/1197/subview.do> 다운로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3. 6).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9. 20). 농식품부, 2025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2천 명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1. 30).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2025. 12).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9939호.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5. 9. 30). 농촌진흥청, 2024년도 농산물소득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2024). 「농산물소득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2025. 1. 17). 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한민국정부(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다운로드.

류정희, 강희정, 이소영, 이주연(2018). 출산육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한필, 강혜정, 김윤형, 윤영석, 전종범, 손찬호, 전가빈(2022). 실경작 농업인의 농업경여체 등록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박미선(2023).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은정, 유해미, 조혜주, 김연진, 서효진, 정은희(20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자영(2022).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개선방안 연구(I):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박종서, 오상봉, 박은정, 강민정, 이지혜, 고제이, 노민선, 최인혁, 정희선, 조미라, 김연진, 윤지연(2025).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충렬(202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이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이슈와 논점 제2425

호.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2026). 2026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부산경제진흥원 공고문(2024. 12. 18).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문(2025. 11. 12).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서울시 보도자료(2024. 8. 26). '저출생 극복 총력'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중세트」 시작.

서울시 보도자료(2025. 6. 13).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더 쉬워진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9. 6).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유해미, 최효미, 김아름, 박은정, 이희현, 김재윤(2024). 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윤홍식, 남찬섭, 김교성, 주은선. (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이병희(2020). 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2020년 6호. pp.57-71.

이상은(202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사회과학논총, 24, 161-185.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5. 2. 24).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에 힘 보탠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공고(제2025-01호).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1차 사업계획 공고.

임소영, 김정승, 김영준, 박미선, 김태곤, 박명호(2022).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완섭, 이주미, 강지원, 최혜진, 송치호, 이지은, 정은희(2022).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김근주, 손연정, 윤자영, 박은정, 정영훈, 박효숙, 이현주, 강희정, 전지현, 전병유, 정준호, 정세은(2018). 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제2025-660).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별고용조사 2022년~2024년 하반기 각년도 원자료; 농림어업조사(농업)\_가  
구원사항 2022년~2024년 & 농림어업조사(농업)\_가구사항.

통계청 보도자료(2025. 4. 17).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5. 6. 24.).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2025). 2024년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Anttonen, A., & Sipilä, J. (2014). Varieties of universalism. In draft  
paper prepared for the UNRISD Conference, New Directions in  
Social Policy: Alternatives from and for the Global South,  
Geneva.

Černič Istenič, M. (2025). Work-life balance on a farm with young  
children in Slovenia.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42(2),  
675-691.

Eriksson, C., & Hajdu, F. (2021). “You have to focus all your energy on  
being a parent”: Barriers and opportunities for Swedish farmers  
to be involved fathers. *Journal of Rural Studies*, 83, 88-95.

#### 〈온라인 자료〉

거창군 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00314/01468/01501.web?a  
mode=view&gcode=1002&idx=15009180&artiSno=](https://www.geochang.go.kr/00314/01468/01501.web?a_mode=view&gcode=1002&idx=15009180&artiSno=) (2026. 3. 18 인출).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36405500  
&bcIdx=&bsIdx=838&menuId=1534&page=1](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36405500&bcIdx=&bsIdx=838&menuId=1534&page=1) (2026. 3. 17 인출).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시책 [https://xn-289an1an6j5ul35d48ai5dj0ixsc0uid4  
bh0n.kr/gb\\_sp\\_info03.php?CCATE=08](https://xn-289an1an6j5ul35d48ai5dj0ixsc0uid4bh0n.kr/gb_sp_info03.php?CCATE=08) (2025. 1. 30 인출).

고용24 홈페이지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  
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06&sy  
stClId=SC00000346](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06&systClId=SC00000346) (2026. 2. 3 인출).

고용24 홈페이지 [https://ei.work24.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  
b0304Info.do](https://ei.work24.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4Info.do) (2026. 3. 5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  
ew.do?news\\_seq=1577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75) (2023. 3. 15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s\\_seq=20251201768](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s_seq=20251201768) (2026. 3. 16 인출).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0866/fileData.do> (2026. 1. 9 인출).

국가데이터처\_통계설명자료서비스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ata?statsConfmNo=101067&kosisYn=Y> (2026. 2. 2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_국민건강보험 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2026. 2. 4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_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B%86%8D%EC%97%85%E3%86%8D%EB%86%8D%EC%B4%8C%20%EB%B0%8F%20%EC%8B%9D%ED%92%88%EC%82%B0%EC%97%85%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chrClsCd=010202&mode=20#> (2026. 1. 27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_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6%8D%EC%97%85%C2%B7%EB%86%8D%EC%B4%8C+%EB%B0%8F+%EC%8B%9D%ED%92%88%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2026. 3. 5. 인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2026. 3. 10 인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_농업경영체등록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bbsSn=0&cssStvl=&gnrlzGroupLevelStvl=0305101000000&hghrkMenuId=MN10003&menuId=MN40248&menuNm=%EB%86%8D%EC%97%85%EA%B2%BD%EC%98%81%EC%B2%B4+%EB%93%B1%EB%A1%9D&menuTypeStvl=CON&tmptNm=defaultContents&upMenuId=MN20368&upMenuTypeCd=DIR> (2026. 2. 2 인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_농업경영체등록 <https://www.naqs.go.kr/hp/contents/>

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Stvl=CON&upMenuId=MN20368&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51010000000&bbsSn=0&menuNm=%EB%86%8D%EC%97%85%EA%B2%BD%EC%98%81%EC%B2%B4+%EB%93%B1%EB%A1%9D&upMenuTypeCd=DIR&tmptNm=defaultContents&cssStvl=sub01\_0601 (2026. 2. 2 인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_농업경영체등록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2026. 3. 9 인출).

국민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21M0.do> (2026. 2. 4 인출).

국민연금\_연금보험료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menuId=MN24001113&tab=tab5> (2026. 2. 9 인출).

국세청\_사업장현황신고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2026. 3. 9 인출).

국세청\_사업장현황신고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4&bbsId=131010> (2026. 3. 9 인출).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2024). 2024 <https://argos.nanet.go.kr/lawstat/twdcvln/chart/graphic/detail?statMngKey=15810867&themaKey=15856659> (2026. 3. 12 인출).

김천시 2026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알림. <https://www.gc.go.kr/district/eomo/bbs/view.do?bIdx=4521024&ptIdx=1807&mId=0601000000&searchCategory=eomo> (2026. 3. 30 인출).

두루누리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2026. 1. 30 인출).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16> (2026. 3. 18 인출).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https://bsbsc.kr/business/65> (2026. 2. 1 인출).

영동군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yd21.go.kr/health/html/sub05/050503.html> (2026. 3. 18 인출).

영동군 홈페이지 <https://www.yd21.go.kr/kr/html/sub04/0409.html> (2026. 3. 18 인출).

- 이천시 <https://www.icheon.go.kr/news/board/post/view.do?bcIdx=785&mid=0301000000&idx=316308> (2026. 1. 30 인출).
- 이천시 [https://www.icheon.go.kr/depart/contents.do?mid=0604070207\(2026. 1. 30 인출\).](https://www.icheon.go.kr/depart/contents.do?mid=0604070207(2026. 1. 30 인출).)
-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4015060003](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4015060003) (2026. 2. 1 인출).
- 정부24.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View.do?CappBizCD=15410000055&tp\\_seq=](https://www.gov.kr/mw/AA020InfoCapView.do?CappBizCD=15410000055&tp_seq=) (2026. 4. 1 인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2026. 2. 4 인출).
- 충청북도 청년포털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560> (2026. 3. 18 인출).
-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507> (2026. 3. 17 인출).
- 홍성군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gstory&logNo=223147637008> (2026. 3. 19 인출).
-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26. 1. 9 인출).

〈법령정보〉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2022. 7. 27.,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26. 1. 20., 일부개정)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부록**

## 부록1. 육아기 농업인 영아부모 면담지

### 육아기 농업인 면담지(0~2세)

- ※ 육아정책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수탁과제의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0~2세(36개월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대답해주시시오.  
(※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 자녀 기준)

### 1. 자녀돌봄 일반

- 1) 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1-1) 가정 내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 외에 육아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이 있습니까?
- 1-2)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기관 및 육아지원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예: 어린이집, 유치원, 놀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학원, 문화센터 등)
- 2)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2. 출산·육아와 영농 운영

- 1)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영농 분야 및 작물은 무엇입니까? 해당 영농의 시기적 특성(농번기, 농한기 등)과 매출 발생 특성(매출 발생 주기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시시오.

2)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영농 운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출산 시기(출산 전후 약 3개월)와 현재(영아기)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시오. (예: 출산후 영농 중단, 대체인력 고용, 가족구성원 분담 등)

2-1)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영농을 중단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중단하셨고,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2-1-1) 소득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했는지 말씀해주시시오.

2-1-2) 중단을 원하였으나 중단하지 못하고 영농을 계속하셨다면, 그 상황을 말씀해주시시오.

2-2) 대체인력을 고용하셨다면, 고용 과정 및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3) 농촌 지역이나 영농 특성(농번기/농한기, 영농 시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 및 육아기에 어려움이 나 부담은 무엇입니까?

3-1) 영농과 육아를 함께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예: 불칙한 근로시간, 돌봄기관 및 돌봄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등)

3-2) 영농특성으로 인한 보육공백(새벽, 야간 등) 해소를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새벽, 야간 돌봄 제공 등)

### 3. 육아 지원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에게 지원되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분)</li> </ul> </li> </ul>
육아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각각 1년씩, 통상임금의 80%~100% 지원(상한액: 월 2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li> <li>※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입 기간이 있는 임금근로자 대상 지급</li> </ul> </li> </ul>
부모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 및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li> <li>※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li> </ul> </li> </ul>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10~25일까지 지원</li> </ul> </li> </ul>

농가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에 대해 영농·가사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로 45~100일 한도 내에서 1일 6만원~10만원 지원(자부담률 0~30%)</li> </ul> </li> </ul>
-------	---

-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1-1) 알고 계시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까?
  - 2-1) 농업에 종사하시기 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3)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3-1) 부모급여를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4) 귀하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신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 5-1)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귀하가 속한 지자체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 6-1) 귀하가 속한 지자체에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지원 제도 관련 향후 의향 및 의견

- 1) 농업인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육아수당(급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지급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일하는 부모에게도 일정 부분이라도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육아수당(급여)\*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급여) 지급을 위해 출산 전 12개월 간 일정 수준의 소득 발생 확인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소득신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육아수당(현재 미시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닌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단기간 정액급여 제도를 가칭함.  
(예: 월 50만×3개월)

3)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과 더불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향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1) 납부 의향이 있으시다면, 납부 가능한 고용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_\_\_\_\_ 원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1~7등급 중 본인이 선택하여 매월 납부  
(자영업자 월보험료: 1등급 - 40,950원, 7등급 - 76,050원)
-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소득(보수총액)의 1.8%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0.9%씩 납부  
(예: 월보수총액이 450만원인 임금근로자의 월보험료는 40,500원)

3-2) 농업인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이 실시된다면, 가입 의향에 변동이 있으십니까?

3-3)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에 대한 육아 지원(육아휴직급여 등)이 확대된다면, 가입 의향에 변동이 있으십니까?

4) 출산전후 및 육아기(0~8세 자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를 구분하여 말씀해주시시오.

(※ 출산전후 3개월/영아(0~3세 미만)/유아(3세~취학전)/초등(초1~2학년))

###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                      ② 여
3)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① 일반농어촌 ② 도서 ③ 산간벽지 ④ 상업지역 ⑤ 기타(            )
4) 영농 분야	(※ 해당하는 모든 분야를 응답해주시시오.) ① 벼농사 ② 채소 ③ 축산 ④ 과수 ⑤ 두류·서류 ⑥ 임산물 ⑦ 특용작물 ⑧ 화훼 ⑨ 기타(                      )
5) 농업 종사기간	총 _____년
6) 소득	6-1) 연간 가구 소득(공적이전, 자본소득 등 모두 포함): 총 _____만원
	6-2) 연간 (영농사업) 매출액: 총 _____만원
7) 경영체 등록	7-1) 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셨습니까? ① 농업인 등록 ☞ 6-2)로 이동    ② 농업법인 등록    ③ 미등록
	7-2) 다음 중 어떤 형태로 등록하셨습니까? ① 공동경영    ② 단일 경영
8)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시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                      ) ⑦ 기타(                      )
9) 배우자의 주된 경제활동	① 배우자 없음 ② 농업 ③ 농업 외 임금 근로 ④ 농업 외 사업 ⑤ 전업주부 ⑥ 기타(                      )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b>연령(만 나이)</b>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b>출생연월</b>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b>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b>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관 미이용 ⑥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육아기 농업인 유아기 이상 부모 면담지

### 육아기 농업인 면담지(3~8세)

- ※ 육아정책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수탁과제의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3세~8세(36개월~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대답해주시시오.  
(※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 자녀 기준)

### 1. 자녀돌봄 일반

- 1) 귀하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1-1) 가정 내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 외에 육아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이 있습니까?
- 1-2)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기관 및 육아지원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예: 어린이집, 유치원, 놀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학원, 문화센터 등)
- 2)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2. 출산·육아와 영농 운영

- 1)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영농 분야 및 작물은 무엇입니까? 해당 영농의 시기적 특성(농번기, 농한기 등)과 매출 발생 특성(매출 발생 주기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 2)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영농 운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출산 시기(출산 전후 약 3개월)와 자녀 양육기(영아기, 유아기, 초등 저학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예: 출산후 영농 중단, 대체인력 고용, 가족구성원 분담 등)
- 2-1)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영농을 중단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중단하셨고,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 2-1-1) 소득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했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2-1-2) 중단을 원하였으나 중단하지 못하고 영농을 계속하셨다면, 그 상황을 말씀해주시시오.
- 2-2) 대체인력을 고용하셨다면, 고용 과정 및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 3) 농촌 지역이나 영농 특성(농번기/농한기, 영농 시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 및 육아기에 어려움이  
나 부담은 무엇입니까?
- 3-1) 영농과 육아를 함께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예: 불규칙한 근로시간, 돌봄기관 및 돌봄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등)
- 3-2) 영농특성으로 인한 보육공백(새벽, 야간 등) 해소를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새벽, 야간 돌봄 제공 등)

### 3. 육아 지원 제도 인지 및 사용 경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에게 지원되는 급여</li> <li>-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분)</li> </ul>
육아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li> <li>- 부모가 각각 1년씩, 통상임금의 80%~100% 지원(상한액: 월 2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li> <li>※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b>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입기간</b>이 있는 임금근로자 대상 지급</li> </ul>
부모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및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li> <li>- 2024년 이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li> <li>※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li> </ul>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제도</li> <li>-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10~25일까지 지원</li> </ul>
농가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에 대해 영농·가사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li> <li>- 지자체별로 45~100일 한도 내에서 1일 6만원~10만원 지원 (자부담률 0~30%)</li> </ul>

-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1-1) 알고 계시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까?
- 2-1) 농업에 종사하시기 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3)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3-1) 부모급여를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4) 귀하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신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 5-1)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귀하가 속한 지자체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 6-1) 귀하가 속한 지자체에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지원 제도 관련 향후 의향 및 의견

- 1) 농업인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육아수당(급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지급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일하는 부모에게도 일정 부분이라도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육아수당(급여)\*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급여) 지급을 위해 출산 전 12개월 간 일정 수준의 소득 발생 확인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소득신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육아수당(현재 미시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닌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단기간 정액급여 제도를 가정함.  
(예: 월 50만×3개월)

- 3)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과 더불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향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1) 납부 의향이 있으시다면, 납부 가능한 고용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_\_\_\_\_ 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1~7등급 중 본인이 선택하여 매월 납부  
(자영업자 월보험료: 1등급 - 40,950원, 7등급 - 76,050원)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소득(보수총액)의 1.8%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0.9%씩 납부  
(예: 월보수총액이 450만원인 임금근로자의 월보험료는 40,500원)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 3-2) 농업인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이 실시된다면, 가입 의향에 변동이 있으십니까?
- 3-3)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에 대한 육아 지원(육아휴직급여 등)이 확대된다면, 가입 의향에 변동이 있으십니까?
- 4) 출산전후 및 육아기(0~8세 자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를 구분하여 말씀해주세요.  
(※ 출산전후 3개월/영아(0~3세 미만)/유아(3세~취학 전)/초등(초1~2학년))

### 배문 1. 귀하 및 귀하 가구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응답을 적거나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해주세요.)

1) 연령	_____세
2) 성별	① 남                      ② 여
3)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① 일반농어촌 ② 도서 ③ 산간벽지 ④ 상업지역 ⑤ 기타(        )
4) 영농 분야	(※ 해당하는 모든 분야를 응답해주시시오.) ① 벼농사 ② 채소 ③ 축산 ④ 과수 ⑤ 두류·서류 ⑥ 임산물 ⑦ 특용작물 ⑧ 화훼 ⑨ 기타(                      )
5) 농업 종사기간	총 _____년
6) 소득	6-1) 연간 가구 소득(공적이전, 자본소득 등 모두 포함): 총 _____만원 6-2) 연간 (영농사업) 매출액: 총 _____만원
7) 경영체 등록	7-1) 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셨습니까? ① 농업인 등록 ☞ 6-2)로 이동 ② 농업법인 등록 ③ 미등록 7-2) 다음 중 어떤 형태로 등록하셨습니까? ① 공동경영 ② 단일 경영
8)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그 외 친인척(_____) ⑦ 기타(_____)
9) 배우자의 주된 경제활동	① 배우자 없음 ② 농업 ③ 농업 외 임금 근로 ④ 농업 외 사업 ⑤ 전업주부 ⑥ 기타(_____)

**배문 2.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2-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2-2. 귀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b>연령(만 나이)</b>	_____세	_____세	_____세	_____세
<b>출생연월</b>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b>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b>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관 미이용 ⑥ 기타 (☞ 적어주세요)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형 육아휴직급여 제도 관련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육아정책연구소